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06-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2016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국민권익위원회

발간사

국가청렴도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 국가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청렴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여정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성찰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도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업무 중에서도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부패행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 및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조문 속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부패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1,843건의 제 · 개정 법령안을 분석 · 평가하여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397개 요인에 대해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의 결실을 담은 「2016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은 평가기준 및 사례 소개를 통하여 평가업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들이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세분화된 목차와 개선결과, 예시로 정리된 개선의견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접근을 원하는 담당자들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행정업무별 사례 및 자발적 개선사례를 수록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저희 위원회의 반부패 청렴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사례집이 성찰의 시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 있어 선제적 부패방지 업무의 총서(叢書)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

2017. 8.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 은 정

CONTENTS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08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10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13 제3절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6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8 제5절 2016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제2장

제 · 개정 법령 평가 사례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28 1. 준수
- 1) 준수부담의 합리성
-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3) 특혜발생 가능성

63 2. 집행
- 1)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2)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3) 재정누수 가능성

102 3. 행정절차
- 1) 접근의 용이성
- 2) 공개성
- 3) 예측 가능성

128 4. 부패통제
- 1) 이해충돌 가능성
-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152 1. 인 · 허가, 승인 · 지정 등 업무
161 2. 부과 · 징수 업무
170 3. 보조 · 지원 업무
176 4. 위탁 · 대행 업무
180 5. 행정조사 업무
186 6. 단속 · 점검 업무
188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195 8. 인사 업무

제3장

현행 자치법규 평가 사례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방안
202 제1절 추진배경
203 제2절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207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8 제4절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234 제5절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사항

제4장

자발적 개선 사례

24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사례
274 제2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제5장

부록

296 1. 평가기준별 확인 목록
306 2. 업무유형별 확인 목록
318 3.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2) 제 · 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322 4. 색인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제3절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5절 2016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01 | 의의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사전적·예방적 부패통제 시스템으로 크게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행법령 평가로 나눌 수 있음

02 |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수립·통보,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별 부패영향평가 절차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3 |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 · 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 · 예측가능성 제고

04 | 필요성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 ·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 ·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 · 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 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 · 운영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영 제30조제1항)

▶▶ 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

- '준수'는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은 해당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는 해당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부패통제'는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등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패통제장치 및 부패방지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으로 세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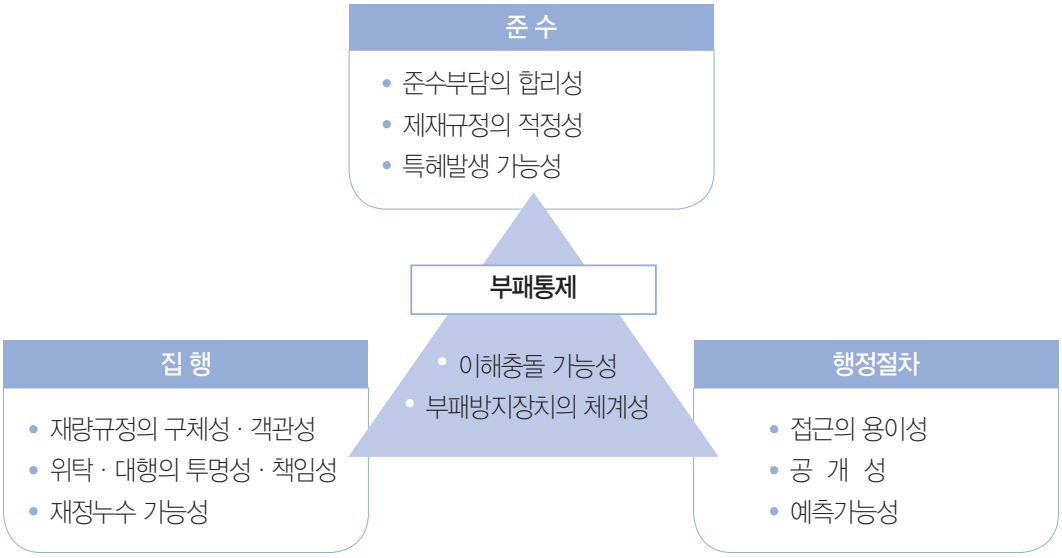

01 |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02 | 집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 ·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 · 대행 시 위탁 · 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 · 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 · 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03 |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04 |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제3절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각 기관은 소관법령의 제 · 개정시 평가에 필요한 제 · 개정안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위원회는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인 4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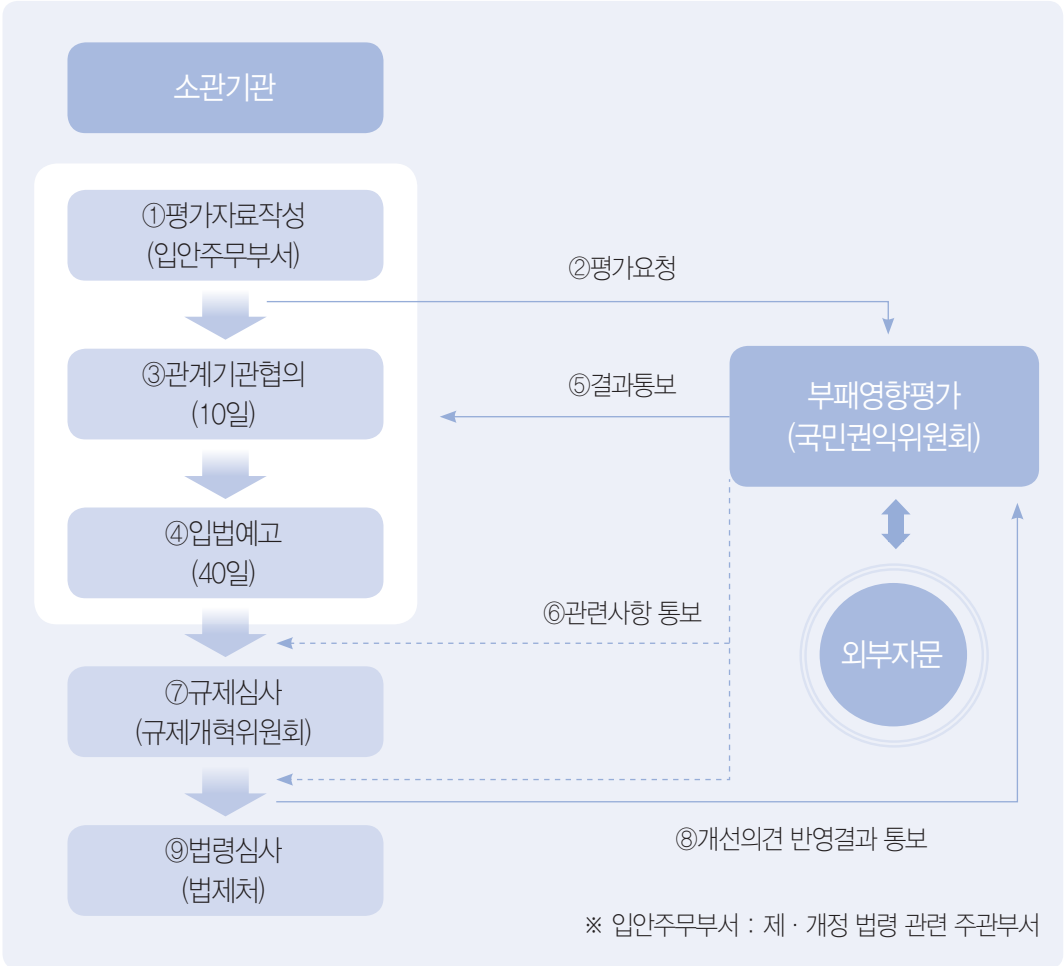

01 | 부패영향평가 요청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 ·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 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 제외 법령 : 직제, 국호 · 국기 · 연호, 상훈 · 전례 · 국경일, 급여 · 수당, 문서 · 관인 · 차량 관리 관련 법령 등

⇒ 제 ·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대상 제외법령 통보[부패영향분석과-1125(2016.4.11.)] 문서 참조

– 개정법령(안)은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첨부('16 부패영향평가 지침, p.23)

– 제정법령(안)은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를 첨부('16 부패영향평가 지침, p.23,25)

▶▶ 평가자료의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공청회 ·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는 담당자 e-mail 등 활용

▶▶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평가 요청시 반드시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문 시행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 · 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02 |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위원회는 의뢰받은 법령(안)의 부패영향평가를 관계기관협의 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 · 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 위원회는 평가 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 · 이해관계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법령(안) 및 자료를 토대로 평가 후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 · 개선권고 · 철회의견 · 참고의견으로 세분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 · 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

03 |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의 반영여부를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의 시책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 · 운영 등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권고사항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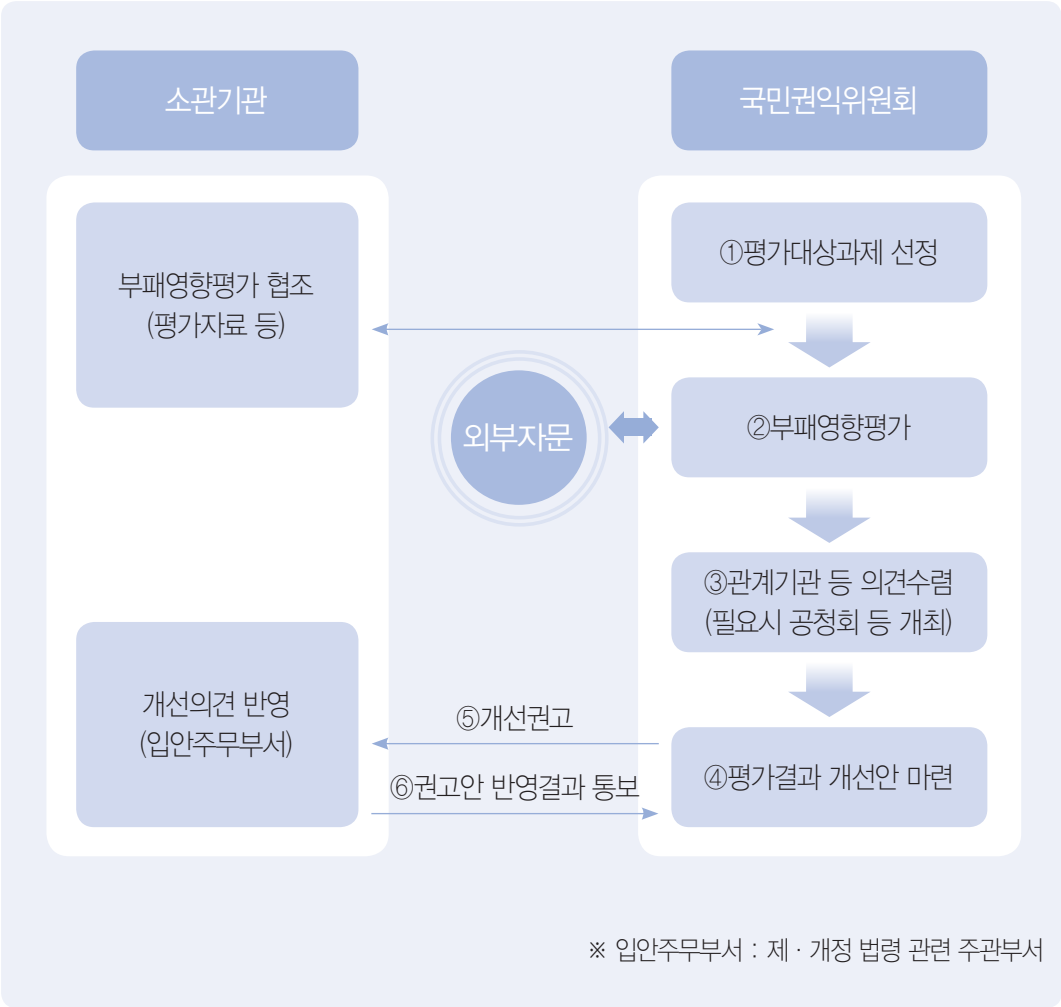

※ 입안주무부서 : 제 · 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01 | 평가대상법령 선정

- 제 · 개정 법령의 평가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이 해당 법령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자치법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령
- 부정부패 · 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법령

02 |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나 실태조사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은 관련기관 · 이해관계인 ·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 ·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03 |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 · 운영 등

제5절 2016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 내용

01 | 2016년도 부패영향평가 총평

2016년도에는 각급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집의 온라인 배포 · 매뉴얼 발간, 설명회,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 재정 누수 방지 및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하여 현행법령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2014년에 「부패영향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을 한 후 2015년도에는 부패영향평가 기준 수정 및 변경을 완료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는 개편된 11개 기준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 1,843개의 제 · 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이 중 109개의 법령안에서 397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령 수를 기준으로 한 기관별 접수 ·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령 평가요청 상위 부처는 국토교통부(219개), 보건복지부(167개), 교육부(121개) 순이며, 개선권고 통보 법령 수는 보건복지부(병원체자원법시행령 등 19개),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17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등 11개) 순으로 많았다.

현행법령은 행정사무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 ·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과제로 선정하여 주차장법, 주차장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현재 관련 자치단체에서 주차장 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치법규 및 사규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률은 전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 간 협력에 의한 사규 자율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자율평가 체계의 정착 · 운영을 도모하였다.

02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중앙부처의 의뢰법령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2016년에는 평균 처리기간은 13.05일로, 전년(15.8일)에 비해 2.3일 단축하였고, 총 109개 법령안에서 39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개선권고를 하였다.

가. 제 · 개정 법령안 접수·처리 현황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1,843개의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받아 평가를 하였고, 그 중 1,734개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로 통보하고, 109개의 법령안에서 39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 · 보완하도록 하였다.

《 접수 · 처리 현황 ('16.1.1.~12.31.) 》

접 수	평가결과 통보		
	원안동의	개선권고	개선권고건수
1,843개 법령	1,734개 법령	109개 법령	397건

나. 평가항목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항목별로는 4개의 평가영역 중 집행 분야(159건, 40.1%)에서 개선권고가 가장 많았고, 9개의 평가기준별로는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98건, 24.7%), 제재규정의 적정성(68건, 17.1%), 이해충돌 가능성(62건, 15.6%) 순으로 개선권고가 도출되었다.

《 평가항목별 개선권고 현황 (109개 법령 397건)》

	평가기준	개선의견 건수
준수 분야 (108건)	준수부담의 합리성	28
	제재규정의 적정성	68
	특혜발생 가능성	12
집행 분야 (159건)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98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38
	재정누수 가능성	23
행정절차 분야 (45건)	접근성의 용이성	7
	공개성	12
	예측 가능성	26
부패통제 분야 (85건)	이해충돌 가능성	6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3
합 계		397

다.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법령별(1,843개)로는 산업개발 관련(463개, 25.1%), 환경보건 관련(377개, 20.5%), 일반행정 관련(341개, 18.5%) 법령이 많았고, 개선법령별(109개)로는 환경보건 관련(34개, 31.2%), 산업개발 관련(22개, 20.2%), 일반행정 관련(15개, 13.8%) 법령 순으로 개선권고가 많이 도출되었다.

《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16.1.1.~12.31.) 》

분야 / 법령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평가법령(개)	1,843	341	192	108	193	463	92	377	77	–
개선권고 법령(개)	109	15	11	6	12	22	5	34	4	–

03 |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통한 국가 재정 누수 방지, 공공행정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민간위탁 제도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자체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조례를 운영하는 등 현행법령 상 고질적 · 관행적 부패유발요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의 운영현황 및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전국단위의 전수조사 방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사전 예비조사 단계부터 대안 마련 · 검증 등 전 과정에 걸쳐 현장의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 포함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법률부터 자치법규까지의 수직적 분석과 유사 분야의 관련 법령까지의 수평적 분석도 실시하여 분석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켰다.

이처럼 객관적인 데이터와 다양한 교차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2016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료 징수 근거 및 산출기준 미흡, 갱신계약에 대한 특혜 시비, 부실한 관리 · 감독 등 부패발생요인이 있어 위탁료 징수의 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갱신계약의 평가 근거 기준 마련 · 평가위원회 제도 도입 등 8가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개선안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04 | 자치법규 및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평가 등 실효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로 내실 있는 자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각 기관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자율평가를 기반으로 개선사항의 이행여부와 자율평가 과제 발굴 · 개선을 부패방지시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각급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였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의 이행률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가점지표로 평가하였고 전체 평균 가점 점수는 7.9점(10점 만점)이었다. 전년에 비해 이행률이 대체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미이행 과제가 조례 등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공직유관단체는 각 기관의 노력으로 타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사규의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 과제를 가점지표로 평가하였고, 132개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107개 기관이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규의 3개 조문 이상을 개선하여 이행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간 자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부패영향평가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몇몇 기관의 경우 개선과제가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과제임에도 평가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을 보여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01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2)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3) 재정누수 가능성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2) 공개성 3) 예측 가능성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 기준별 사례 목차

평가항목	평가기준	주요 검토 내용	사례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항공사업법 시행령 · 모자보건법 ·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령 · 북한인권법 시행령
	특혜 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 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위탁 ·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정 민간 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 · 대행 시 위탁 · 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 · 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재정 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 · 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평가항목	평가기준	주요 검토 내용	사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1 |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개요

- 법령 등의 적용 대상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령 등의 적용 대상자가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통해 그 부담을 면제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 · 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 · 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필요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 · 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 ·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사례 1 : 「항공사업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9조(법 제53조 및 제5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 횟수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현황

- 제정령안 제17조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
  - 법 제29조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제한

※ '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사업 및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국내 ·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분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의 기준(법 제8조제1항)
- 해당 사업이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면허의 기준(법 제10조제2항)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문제점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과다 부과 우려

– 법 제29조제1항은 사업 및 자본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제정령안 제17조제2항은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가중하는 경우의 과징금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최고액인 20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며 수범자의 과도한 부담 우려

검토결과: 개선권고

■ 과징금 가중부과 시 법상 상한액을 지키도록 명시

– 과징금을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명시

【예 시】

제정령안	개선권고안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 횟수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과징금은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평가서 [예시]의 개선권고안은 해당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유사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 · 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③ 시 ·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 ·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시 · 도지사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사례 2 : 「모자보건법」

평가대상 조문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 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 · 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조치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 · 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② 산후조리업자는 영유아가 임산부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황

■ 법률개정 배경

– '15년 국정감사 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산모를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 감독 허술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

〈 감염병 발생 및 법률 위반 적발 현황 〉

-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사례가 증가
  ('13년 49명, '14년 88명, '15년 270명)
- 감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모자보건법 위반 산후조리원 무더기 적발
  ('14년 77개소, '15년 상반기 62개소)

※ 산후조리원 현황 : '06년 294개, '13년 557개, '14년 592개, '15년 610개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증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10월「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수립

※ 신규 종사자 채용 전 잠복결핵검사 의무화,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조사 일시 제한, 감염병 진료시 보고의무 등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이행 차원에서「모자보건법」등 관련 법령정비 추진

관련 자료

산후조리원 내 '질병.상해' 발생 소비자상담, 전년보다 2.3배 증가('14년, 한국소비자원)

– '질병.상해' 179건 중에는 신생아 피해가 91.1%(163건)로 대부분을 차지

– 모지동실 확대, 외부 출입자 통제 · 관리 강화, 신생아 물품 개발사용 및 관리 강화를 요청

산후조리원 급증 따라 피해도 증가...관리 · 감독 강화해야 ('12년, 국회입법조사처)

– 산후조리원이 급증하면서 신생아 집단 감염사고의 빈발, 감염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미흡,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

검토할 개정(안)

–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2호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 · 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 시 제15조의8(시정명령) 제3호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제26조(벌칙) 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또한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은 산후조리업에게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의무를 부과

※ 신생아실의 집단 감염,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에 의한 교차감염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 신생아와 산모 간 애착형성을 위해 모자동실(母子同室)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정명령이나 벌칙은 없음

문제점

■ 산후조리업자에게 불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준수의무 부과 및 이에 근거한 시정명령 · 벌금 부과는 과도

– 산후조리업자에게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 · 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조치"를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1)]

–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조치'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예상하고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 바,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벌칙이 달라질 수 있어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어 벌칙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우려
- 또한 산후조리업자에게도 예측가능성이 없이 과도한 준수부담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가능성 내포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 중에 "빈틈없는 감염관리를 위해「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여 준수율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1) 구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등 위헌제청에서 재개발 · 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으로 하여금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조합임직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중요한' 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 지를 예견하기 어렵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시. 추가로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의 경우에도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처벌의 범위가 어떠한 지가 불분명하여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 그 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사건 등이 있음

〈 참고의견 〉

- 산후조리업자가 준수할 사항으로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바, 향후 모자동실 인식확산, 확대 추이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모자동실 미 운영 시 과태료 등 제재방안 마련 필요
  - 모자동실은 감염병 예방과 아이와 산모간의 정서적 교류를 높이기 위해 WHO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모자동실 확대는 필요
  - 다만, 모자동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확대 추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미 운영에 대한 과태료 등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현재 분리방식의 조리원 서비스는 산모들의 수요에 맞춘 것이며 감염우려만 보면 모자동실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생아를 24시간 산모에게 맡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상임이사)

검토결과: 개선권고

-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2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거나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준수사항을 열거하거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경우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위반 시 허가취소, 벌칙 등 부과
  - 보건복지부령에서 건강관리,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경우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관련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

【예 시】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현 행	개선의견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 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1. (현행과 같음) 〈①안 :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열거
	〈②안 :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 · 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조치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 · 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에 관한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킬 것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 · 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4. (현행과 같음)
② 산후조리업자는 영유아가 임산부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사례 3 :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 4. (생략)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생략)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 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 (인사혁신처(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황

-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제출
  - 제3조와 별지 제1호서식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을 할 때 설립발기인과 임원 취임 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규정

-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제12조는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규정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 없는 업무에도 주민등록번호 제출의무 부과
  -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과도한 준수부담 부과

-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 없는 사무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정관 변경허가 · 해산 신고 · 잔여재산 처분 허가 또는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4-25-30호, '14.12.22.)

3. 결론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정관 변경허가 · 해산 신고 · 잔여재산 처분허가 또는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검토결과: 개선권고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 제12조 제1 · 2 · 5 · 6 · 7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71호, 2015. 6. 12.)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주소 ·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5.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개요

- 평가 대상인 법령, 자치법규 등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벌칙, 과태료 등)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
- 제재수준이 미약할 경우 실효성이 없고, 제재수준이 과도할 경우 부패행위를 통해 제재 회피 시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재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

평가내용

- 제재규정 검토
  - 제 · 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관련규정 · 내용을 검토
- 제재규정의 필요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 · 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 경중 · 횟수 · 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 · 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지 검토

사례 1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1]

영업정지 기준(제1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1호	영업소의 폐쇄
2.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 · 생산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2호	영업정지 1개월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3호	1차 : 영업정지 10일 2차 : 영업정지 15일
	4.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 · 생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 영업정지 10일 2차 : 영업정지 15일
6.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4호	영업소의 폐쇄

현황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2조는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문제점

- 위반횟수에 대한 기준 등 일반기준 부재
  - 제정령안 [별표1]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나
  - 위반횟수 계산 방법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 부재로 인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부패 발생 우려

- 행정처분 개별기준 미흡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및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등에 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부재하여 해당 영업자에 대한 제재 불가능

검토결과: 개선권고

〈금번 시행령 제정사항〉

-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규정
  -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적용 시의 위반횟수 계산 방법 등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하여 규정

〈추후 법률 개정사항〉

- 행정처분 기준 보완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시행령 개선사항 예시】

제정령안	개선권고안
[별표 1] 영업정지 기준(제10조 관련) 〈신 설〉	[별표 1] 영업정지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00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평가서 [예시]의 개선권고안은 해당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법률 개선사항 예시】

현 행	개선권고안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 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신 설〉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 · 생산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생략)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 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 · 생산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 본 평가서 [예시]의 개선권고안은 해당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사례 2 : 「주차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4]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1. ~2. (생 략)	(생 략)	(생 략)
3. 법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의19제1항 제3호	영업정지 10일
4. (생 략)	(생 략)	(생 략)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 제19조의19제1항 제5호	
가. 중상사고 2회		영업정지 1개월
나. 중상사고 3회		영업정지 5개월
다. 중상사고 4회		등록취소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법 제19조의19제1항 제5호	
가. 2회		영업정지 1개월
나. 3회		영업정지 3개월
다. 4회 이상		영업정지 6개월
7. (생 략)	(생 략)	(생 략)

비고

1. 위 표 제3호 ·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2. (생 략)

현황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4]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법 제19조의19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 특히, 제3호 ·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고 규정

문제점

- 2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기준일 규정 부재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가 제3호 ·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해 2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위한 횟수 산정의 기준일이 없이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횟수'라고만 규정할 뿐, 순차적 가중 및 집행을 위한 행정처분 산정의 기준일 규정 부재
    - ▸ 1회 이후의 위반행위를 처분할 경우, 위반행위일을 기준으로 할지?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할지? 명확하지 않아 처분권자 임의로 판단할 우려가 높고,
    - ▸ 행정처분의 가중을 피할 목적으로 처분일을 늦추기 위한 불법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상존
  - 2차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이 늦어질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최근 1년)을 적용할 수 없어 제재의 실효성 저하 우려

-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부재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가 [별표 4]에 규정된 서로 다른 위반행위를 2개 이상 범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이 없어 적정한 제재 미흡

검토결과: 개선의견

- 2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기준일 규정 마련
  - 1회 위반 시 기준일은 '행정처분을 한 날', 2회 이후 행정처분 기준일은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

【예 시】

제정령안			개선권고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1. ~2. (생 략)	(생 략)	(생 략)	1. ~ 7. (생 략)	(생 략)	(생 략)
3. 법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2회이상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의 19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4. (생 략)	(생 략)	(생 략)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 제19조의 19제1항제5호				
가. 중상사고 2회		영업정지 1개월			
나. 중상사고 3회		영업정지 5개월			
다. 중상사고 4회		등록취소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법 제19조의 19제1항제5호				
가. 2회		영업정지 1개월			
나. 3회		영업정지 3개월			
다. 4회 이상		영업정지 6개월			
7. (생 략)	(생 략)	(생 략)			
비고 1. 위 표 제3호 ·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생 략) 3. 〈신 설〉			비고 1. 위 표 제3호 ·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현행과 같음)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본 평가서의 개선권고 [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음

사례 3 : 「북한인권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조(위원회 구성 · 운영) ③ 통일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해촉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회 관련 교섭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해당 위원을 추천한 교섭단체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 황

- 제2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

※ 「북한인권법」 제5조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문제점

-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미흡
  - 제2조제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다른 경우보다 강한 제재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다른 경우와 같이 임의적 해촉 규정을 두고 있어 비위사실이 있음에도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낮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에 대한 제재 강화

–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적 해촉 규정으로 개선

【예 시】

제정령안	개선권고안
제2조(위원회 구성 · 운영) ③ 통일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단서 신설〉 해촉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회 관련 교섭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 6. (생략)	제2조(위원회구성 · 운영) ③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 6. (현행과 같음)

※ 본 평가서 [예시]의 개선권고안은 해당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3) 특혜발생 가능성

개요

- 법령 등에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특혜를 획득 · 유지 · 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되거나 용인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평가내용

-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검토
  -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 검토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 · 대상 · 절차 · 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 · 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 · 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 · 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 · 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사례 1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안경비안전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 · 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현 황

■ 법 제정 연혁

–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연안사고가 해양사고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

– 이에 반해 연안 체험캠프 활동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같은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스킨 스쿠버 체험활동 중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 미비에 따라 정대수의원 대표발의('13.11.6.)로 법률 제정('14.5.21.)

■ 개정 내용

– 기존 운영자 개념을 운영자와 사업자로 구분하여 각기 역할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개별 가입 의무,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책임 범위를 명확화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항 개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수상형 체험활동(물놀이, 스노클링 등), 수중형 체험활동(스쿠버 다이빙, sea walking 등), 일반형 체험활동(갯벌체험, 조개잡기 등)을 연안체험활동이라 규정

〈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개정(안)	비고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제외한다)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삭제

문제점

- 특정집단(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안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최소한의 안전 장치 확보없이 운영토록 하여 국민안전 위협 우려

  – 국민안전처는 현행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바, 그 사유로는「청소년활동 진흥법[2]」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음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에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더라도 20명 이상인 수상형 체험활동과 10명 이상의 수중형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란 교회 · 사찰 등에서 청소년 활동이 종교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수련회, 템플스테이 등)으로 상호간 구분하기 어렵고 오히려 종교활동에 가까운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 ·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②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에 반해「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의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연안체험활동은 청소년만이 아닌 성인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종교적 활동과는 무관한 사항임

•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삭제를 통해 종교단체가 행하는 연안체험활동을 국가의 관리 · 감독 없이 무방비로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작성(제9조), 출입통제(제10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제11조), 보험가입(제13조), 연안체험활동의 제한(제14조)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됨

– 특히 동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으로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 시, 종교단체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사각지대를 초래하여 제2의 참사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개정안 제12조제1항제2호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도「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관리 ·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수상레저안전법」,「유선 및 도선사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등의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면제 조항 없음

3)「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 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2013.11]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의 검토보고서(13쪽)는 래프팅, 해양탐사 등 수상 · 해양활동을 고위험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음

4) 2013년 7월 18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서 열린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진 뒤 그중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가 실종, 사망한 사건임 (출처 : 위키백과)

【예 시】– 연안체험활동 신고 면제

개정안	개선의견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안경비안전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 · 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안경비안전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사업자이면서 운영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 · 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삭 제〉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사례 2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말한다.

제1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 · 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한다.

제36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법 제34조의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제47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 ② (생략)

③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업무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 평가 업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

현 황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으면서, 산림복지시설을 조성 및 운영할 수도 있음(법 제32조 및 제53조)
  - 또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도 조사하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업무도 담당(시행령 제정안 제36조 및 제47조제3항제3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법 제32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업 범위(법 제53조)

1.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2.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8. ~ 11. (생략)

문제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단지 사업시행자일 경우 동일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도 조사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조성계획의 경제적 · 사회적 타당성 및 단지조성 원칙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 이러한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시행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도출될 개연성이 있어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또한 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일 경우 동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을 평가*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 가능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인력기준 및 인증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평가

  – 이러한 경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검토결과: 개선권고

- 진흥원이 산림복지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는 타 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이 시행하도록 규정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 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산림복지시설 평가는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시행하도록 규정

  ⇒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담보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6.23.)

제2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 · 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제37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법 제32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사례 3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할 경우

2. ~ 11. (생 략)

현 황

■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소득 계층별 다양한 품질의 임대주택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의 직접 건설방식은 시행자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함에 따라

* LH공사 부채/부채비율 : '12년 138조(466%)

⇒ LH공사는 국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해 '부채동결선언'('13.11.4)

〈 임대주택 공급계획(준공기준) 〉

계	건설 임대	국민	영구	공공임대		매입 · 전세
				공공	민간	
정부11.0만호	7.0	3.8	1.0	1.2	1.0	4.0
LH 8.3 만호	4.8	3.0	0.8	1.0	–	3.5

■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건설기금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 부동산투자회사 인가 현황 (국토해양부 통계자료 2014.4월 현재)

구 분		'14.4	'13	'12	'11	'09	비 고
부동산 투자회사 (개)	계	84	79	72	70	48	
	①자기관리	12	12	15	15	5	
	②위탁관리	43	35	25	21	12	
	**기업구조조정	29	32	32	34	31	
자 산 규 모(조)		12.3	11.4	8.2	8.2	7.6	

① 자기관리리츠 : 실체형 회사로 자산관리회사 없이 직접 자산을 투자 · 운용하는 회사

② 위탁관리리츠 : 명목형 회사로 위탁관리 · 기업구조조정 형태가 있으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리츠 : 기업의 채무상환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구성하여 설립된 회사

문제점

■ 개정안은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후 부동산투자회사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음에 따라 임대주택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추첨이나 공개경쟁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비하여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주택건설기금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용도를 임대주택건설로 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20.)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1의2.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공급할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02 |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개요

-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인 재량행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

평가방법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의 양태, 효과의 종류, 기간의 장 · 단, 금액의 상한 · 하한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는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당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설정 · 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사례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6조의2(어린이집 휴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현 황

■ 시행규칙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발생 시 어린이집에 휴원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
- 따라서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기타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휴원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 개정법률(2015.12.29.)에서 휴원명령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 규칙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법률에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하고 휴원명령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것은
  - 휴원명령을 내릴 다양한 사유를 법률에서 미리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 법률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긴급사유 발생 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휴원명령을 통해 영유아를 보호토록 하기위해 휴원명령의 추가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래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 법률이 정한 “~등 긴급한 사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기타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휴원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비교 〉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어린이집 휴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는 긴급한 사유에 대한 판단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부여한 것이며,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에게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임

- 타 법률 체계에서도 법률에서 '긴급한 사유'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량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음

〈 타 법률체계상 '긴급한 사유' 규정 현황 〉

법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 도로교통법(제15조)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 등
• 선박안전법(제13조) –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적용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8조) –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의 구조를 위해 최대승선인원 초과 시 – 황천(荒天)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항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검토결과: 개선권고

-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동일하게 반복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한 바,
  -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동등한 '긴급한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거나
  - '긴급한 사유'를 추가적으로 특정하기 곤란 할 경우에는 휴원명령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삭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휴원명령을 규정한 평가대상조문 삭제

개정안	개선의견
제36조의2(어린이집 휴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라 휴원을 할 경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휴원 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삭 제〉

※ 개선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문 대비표를 제시함

사례 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③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생략, 검사기간의 단축 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제정안 내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4조는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 세부적인 사항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내부통제기준 :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평가대상 조문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유인으로서 검사의 생략 · 단축 또는 제재의 감면 규정

〈내부통제기준제도 현황〉

- (내용) 법 시행령 안에 따르면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의 파악 · 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내부감사는 물론 정보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 포괄
- (목적)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등 절차를 제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사전적 · 상시적 통제 · 감독 체계 구축
- (현황) 은행법 · 보험업법 · 자본시장법 ·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 준수 규정

문제점

- 법률의 위임근거 부재로 금융회사의 준수부담 가중
  - 법 제24조제3항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 이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각종 검사와 제재라는 중요감독수단의 완화적용까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는 불충분
  - 금융회사에 대한 중요감독수단인 검사와 제재의 완화를 법률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준수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도

- 검사와 제재라는 중요감독수단의 완화를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수의 유인으로 규정하여 검사권자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 우려
  - 검사와 제재의 완화 판단사유인 금융위원회가 정한 '효과적인 내부통제기준',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과 완화 정도인 '검사의 생략, 검사기간의 단축 또는 제재를 감면'이 포괄적이어서 검사권자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무분별하게 적용할 우려
  - 금융회사 간 내부통제 수준편차가 크며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검사 · 제재 완화 대상이 되기 위해 감독기관에 로비 등 부패 유발 가능성 내재

[관련 자료 1]

- 금융회사 검사 · 제재 개혁방안(금융위원회, 2015.4)
  - 금융회사의 규모 · 특성에 따라 내부통제 수준의 편차가 크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
-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유도와 연계한 금감원의 현장검사 운용도 미흡
  -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금융위원회 · 금감원, 2014.8)
  - (일선 임직원) 성과 중심의 경영기조 및 보상체계로 인해 내부통제 등한시
  - (CEO 및 감사)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인식 및 구체적인 역할 · 기능 미비

[관련 자료 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2. 제6조를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토결과: 개선의견

■ 검사와 제재 감경 관련 조항 삭제 또는 감경 근거마련 후 감경사유 · 정도 구체화

–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평가대상 조문 삭제

– 추후 ①법에 감경 근거를 마련한 후 ②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해당 분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감경사유 · 정도를 일반기준*에 명시

※ 평가대상조문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 '검사의 생략, 검사기간의 단축 또는 제재를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정도 모두 구체화

※ 금융기관의 검사와 제재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추후 검사 또는 제재 감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동 규정에 마련하여 시행령에 명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평가대상조문 삭제

개정안	개선의견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③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생략, 검사기간의 단축 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삭 제〉

※ 개선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조문 대비표를 제시함

【유사 입법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 정도 등과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 · 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 라. (생 략)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3. ~ 6. (생 략)

④ 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증거제출방법 및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3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0조(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2. 교육과정 편성, 강사 등 교수진, 교육시설 · 설비에 관한 사항
3. 운영경비의 조달 능력

현 황

- 법률에서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대상조문 제10조제2항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 및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

문제점

- 지정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정될 우려
  - 지정요건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교육과정 편성, 강사 등 교수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선정될 우려

〈 전문가 자문결과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방법) 마련 측면

- 지정요건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고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지정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지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정보공개장치 및 제재규정이 없을 경우에 절차규정에 대한 해석논란으로 인해 계속적인 질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대량 발생할 우려
-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교육과정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최소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무엇인지 등을 규정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검토결과: 개선권고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44호, 2015.11.19.)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1명 이상의 전임교수 요원을 확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 · 장비를 확보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2) 위탁·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개요

- 행정권한 ·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 ·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지 평가

  ※ '위탁 · 대행' 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 수탁 · 대행기관의 선정절차 · 운영방식이 투명한지, 관리 · 감독 수단이 합리적인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이 있는지 등 평가

평가방법

- 위탁 · 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위탁 · 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 · 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 · 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위탁사무의 내용이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 수탁기관이 재위탁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 · 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 · 대행의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 · 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위탁 · 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 위탁 · 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 · 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 · 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규정 등이 있는지 검토

– 위탁 · 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 · 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 · 대행기관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 · 대행 기관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 · 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 · 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 수탁 · 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사례 1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6. 1. 27.신설) 〉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7. (생략)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0조(권한의 위임 ·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제20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략)

제52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22조의3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15.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법 제22조의3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 7. (현행과 같음)

현 황

- 시행령 개정안은 제52조제1항제3의2호를 신설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으며,
- 제52조제2항제5의3호를 신설하여,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
- 또한, 제20조의3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문제점

-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권한의 행사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에 따른 책임성 확보 장치 미흡
  - 법 제22조의3 제3항에 규정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민간연구기관 중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수요조사,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등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논리가 적용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에서는 행정기관이 행정권한을 위탁하려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계약에는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
    - 행정권한을 다른 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행정권한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업무만을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비용지원 업무 뿐만 아니라 권한을 함께 위탁하여 권한의 주체와 비용 지원자를 일치시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 불명확

–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권이 자의 · 편의적으로 행사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법 개정시 대통령령 또는 고시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불명확

– 법 제22조의2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지역별로 설치하는 심의(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짐

–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 제52조제1항제3호의2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음
-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구성 · 운영 권한을 위탁하여 권한의 주체와 비용 지원자를 일치시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20조의3제4항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도 생각될 소지가 있어,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불명확해지고, 이는 위원회 운영의 부실과 책임소재의 불명확 및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내포

검토결과: 개선의견

■ 이번 시행령 개정 시 반영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운영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20조의3제4항) 삭제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도록 수정(시행령 개정안 제52조제1항제3호의2)

– 전문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수정(시행령 개정안 제52조제2항제5호의3)

■ 추후 법률 개정 시 반영사항

– 전문연구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사유 및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신설

– 대통령령 또는 고시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재량권이 자의 · 편의적으로 행사될 여지 사전 차단

【예 시】 – 이번 시행령 개정시 반영의견

개정령안	개선의견
제20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략)	제20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 ③ (생략) ④ 〈 삭 제 〉 ⑤ (생략)
제52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22조의3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 15.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 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5의3. 법 제22조의3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2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22조의3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5의3. 법 제22조의3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예 시】 – 추후 법률 개정시 반영 사항

현행법률	개선의견
제23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 평가서의 개선권고 [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음

사례 2 :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한다.

현 황

■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법) 제12조는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 및 콘텐츠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것을 규정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 개요

◎ (개념) 콘텐츠 간 또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결합과 융합을 통하여 창출된 콘텐츠

◎ (경과) 문화창조융합벨트 아래 6개 거점 구성 진행 및 펀드 조성

– 기획(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화(문화창조벤처단지), 구현 · 소비(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인재양성 · 기술개발(문화창조 아카데미)

– 15년도 융합콘텐츠 전문펀드 조성 : 1,385억 원 규모의 융 · 복합콘텐츠 기획 · 제작 · 사업화 지원 펀드, 미래창조과학부 · 중소기업청과 협력

◎ (기대효과) 융합콘텐츠산업의 성장 및 53,000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예상

■ 평가대상 조문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 기관을 지정 가능하며,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에 정하도록 위임 규정 마련

문제점

- 전문기관 지정 요건이나 지정 과정 등 절차 불투명
  - 개정안 제12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이나 역할에 대한 기준 미비
  - 행정청에서 임의로 지정기관을 선정할 우려와 행정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정 요건을 정하였더라도 필요에 따라 변경이 용이해 지정을 원하는 기관 · 단체에서 불법적으로 로비할 가능성 내재

-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 부재로 무분별한 지정 가능성
  - 융합콘텐츠의 기획 · 제작 · 개발, 소비 · 구현을 위한 유통 확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부여
  - 법정위탁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법률에서 지정기준과 절차 등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률의 위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유발요인 내재
  - 융합콘텐츠 활성화 사무를 전문기관에 부여하면서 전문기관 지정요건 등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개정안에서는 부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무분별한 전문기관 지정 우려

검토결과: 개선의견

- 전문기관 선정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전문기관 지정 요건, 선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공정한 심사 및 우수업체 선정
    ※ 제도운영 상황에 따라 지원 및 선정기준, 심사방법, 관리 · 감독 및 불법 ·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이 타당

〈추후 법 개정사항〉

-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 및 전문기관 지정 · 운영에 관한 위임 규정 신설

【예 시】

시행령 개정사항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신 설〉	제00조(전문기관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00조제00항에 따른 융합콘텐츠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융합콘텐츠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2. ---------- ② 제1항에 따라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개발등 융합콘텐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개발등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또는 ① (개선의견 제1항과 같음) ② (개선의견 제4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한다.

추후 법 개정사항

제정안	개선의견(예시)
〈신 설〉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 제○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유사 입법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법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 · 연구 · 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 · 전시 · 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 6. (생 략)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9조(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3.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예기술 개발 전담인력 확보 현황
2. 공예기술 보유 현황
3. ~ 5. (생 략)

③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사례 3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5)]」

평가대상 조문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인증평가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3790호, 2017.1.20.)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평가 당시 법령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현 황

- 개정안 제3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규정
  - 신설된 제4항은 인증기관이 절차를 위반하거나 인증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
  - 운영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해당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 운영기관
> - (선정)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기관 중에 선정
> - (업무) 인증기관 감독, 인증결과 사후관리, 인증 관련 제도 개선 등
>
> ➔ 인증기관
> -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 요청한 일반 업체 중 전문 인력, 연구 실적 증 인증업무 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선정
> - (업무) 건축주등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뢰시 평가 및 인증서 발급

문제점

- 제3조제4항에서 운영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해당부처에 건의하는 것을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 인증기관이 감독기관인 운영기관과 결탁할 경우, 인증기관은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사업 유지 가능

  ※ 행정처분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감독업무를 운영기관에 위임하여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내용 파악 곤란

검토결과: 개선권고

- 개정안 제3조제4항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
  - “건의할 수 있다.”를 “건의하여야 한다.”로 수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99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6호, 2017.1.20.)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 재정누수 가능성

개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 ·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 ·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 · 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방법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검토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지원수준이 적절한지 검토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 · 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결정주체, 결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 · 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확보 수단 검토
  -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확인 수단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확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신청 등이 위법한 경우, 지원 취소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사례 1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0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 운영을 위한 비용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 · 자문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교육과정 개설, 교육자료 제공
   나.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술의 조사 · 기술개발, 평가 · 실용화 및 보급 · 확산
   나. 네트워크 · 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 또는 침해 발생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대상기관의 보호 및 침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과 협조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현 황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방법 ·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지원의 범위, 지원 절차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방산관련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현황 : 2015년 33개 업체 5,000만원, 2016년 7,500만원(미집행)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 사업 내용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대상은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 · 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 · 각군 · 국방기술품질원 ·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 · 연구기관 ·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2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외에 방산업체 95개 등이 해당되며, 향후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이 법 시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제점

-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언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지원대상의 선정 및 심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원사업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거나 부실기관 선정으로 예산낭비 우려
  - 선정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할 경우 부실사업이나 부실기관에 대한 지원 우려 및 지원을 받기 위한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가능성 내재

부실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보도사례

정부 기업지원 사업, 부실 심사로 혈세 낭비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수출 우대기업들이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되며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부터 사후 제재까지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략) 다른 금융지원사업들도 부적절한 업체에 돈을 쏟아부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략) 주요 기관이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해 수준 이하 기업까지 지원 문턱을 낮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 생략) [연합뉴스TV, 2015. 2.11.]

검토결과: 개선권고

-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내용, 지원의 내용과 수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

    ※ 예산확보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구체적 내용 마련이 어려울 경우 공고에 의한 추진방안 검토

- 지원대상 선정, 심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심사 및 선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공정한 심사 및 우수업체 선정을 통한 재정누수 예방

    ※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세부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기 어려울 경우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제도운영 상황에 따라 지원 및 선정기준, 심사방법, 관리 · 감독 및 불법 ·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이 타당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64호, 2016.6.30.)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 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 · 자문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자료 제공
   나.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의 조사 · 개발, 평가 · 실용연구화 및 보급 · 확산
   나. 네트워크 · 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 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 복구 등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사례 2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평가대상 조문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현 황

- 법 제46조 제3항에 방사능 재난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근거 마련(신설)

  * 대상기관 : 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안위는 현재 방사능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 · 훈련과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다양한 재정사업**을 추진

  ** 사업명 : 방재환경 기반구축, 16년 예산액(88.3억원)

방재환경 기반구축 사업내용

- 현장지휘센터 및 중앙통제상황실 관리 · 운영
- 방사능방재교육, 방재훈련 실시
- 방사능테러대응 장비시설 구축 등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사업

- 「원자력안전법」및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관리 및 교육 등

문제점

- 재정지원 및 집행기준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하위법령 위임규정 불비
  - 재정지원의 근거만 법률에 규정할 뿐, 출연금 집행, 사후관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규정이 없어, 재정지원의 투명성 저해

-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규정 미비
  - 국가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연금[6]은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 · 감독이 매우 중요
  - 출연금의 사용용도가 불명확하거나 환수규정이 없는 경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 발생 우려

관련 사례

도로교통공단이 2012년도 연구 · 개발사업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12억 2천만 원 중 사내복지기금에 4억 5천여만 원, 운전면허시험장 대부료 납부에 1억 7천여만 원 등 총 6억 3천여만 원을 부당 사용 (연합뉴스, 2013. 10. 21)

검토결과: 개선권고

〈 법률 개정 사항 〉

- 출연금 지원 관련 세부 기준 · 절차를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명시

【예 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③ 생략 〈신 설〉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정부가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전

〈 시행령 개정 사항 〉

■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출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영규정 마련

① 출연금 지급신청서 제출 의무화

–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소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

② 출연금 지급 전 타당성 등 검토

–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③ 출연금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법령 상 주요 업무로 한정

④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환수 의무화

⑤ 출연금에 대한 별도계정 신설 규정 마련

⑥ 출연금 집행실적 보고 의무화

–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날부터 OO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집행의 책임성 부여

【예 시】

시행령	개선의견(예시)
〈신 설〉	제O조(출연금의 지급 · 사용 · 관리) ①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연금지급신청서에 소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③ OOO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정보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업무 4. 그 밖에 OOO원의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④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OOO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OOO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OOO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OO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유사 입법례】

한국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지급 · 사용 및 관리) ①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시험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비용
3. 시험 시행을 위한 기자재 및 시험 시설 구축 비용
4. 시험 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국시원 운영 등에 드는 경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출연금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적과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례 3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가족지원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가족지원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지원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현 황

- 개정령안 제6조제7호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주체자격 및 요건'을 규정

민간단체 등의 지원(건강가정기본법 제3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점

■ 위탁운영비 등 허위 · 부정 청구 및 수령 시 환수제도 미비

– 수탁자가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예산낭비 및 부패유발 우려

관련 사례

➔ "부실 청주시 건강가정센터 철저 조사해야"('11.5.27.뉴시스, 충청 in news 등)

– 충북여성연대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체조사를 근거로 '직원공개채용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후에 보험료를 직원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청주시 건강가정센터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충북도와 청주시에 요구했다".(이하 생략)

➔ 경북 상이군경회원들 "지부장 4명 횡령 · 사기" 검찰에 고소('14.11.4.영남일보)

– 대구 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북지부의 김 지부장 등은 '14.1월 화훼업자와 제단장식용 꽃 등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4천400만 원과 폐조화 판매대금 1천5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하 생략)

➔ 해양생물파크 비리, 창원시는 책임없나('15.10.14.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등)

–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직원을 적게 채용하고 남는 인건비 빼돌리기, 시설물 무단 사용, 관리 및 운영비 예산의 전용, 위탁수수료 집행잔액의 부당 사용 등 업체의 위탁수수료 부당 사용액만 7,000만 원이 넘는 등 창원시는 업체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대표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결과: 개선권고

〈차후 법률 개정 사항〉

■ 위탁운영비 정산 및 환수 근거 규정 마련으로 예산낭비 예방

– 수탁자가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환수제도 마련으로 예산낭비 방지 및 부패유발 요인 차단

【예 시】

현 행	개선의견
〈신 설〉	제○조(위탁료 등 경비 환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가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03 |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개요

- 행정절차상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의견진술 제도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에 참여 · 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

평가방법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참여제도에 이해당사자, 관계전문가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참여 기회는 충분한지,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사례 1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2의1]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제6조제4항 관련)

1.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변경 ·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세대의 대표자는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자치의결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거주 세대 의견조사서(별지 제15호의1서식)

2) 금연구역 지정 관련 참고자료(소재지, 위치, 면적, 도면 등 포함)

나.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 절차 하자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 내역의 사실 여부 및 신청 절차 하자를 확인한 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신청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 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내역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 · 반려할 수 있다.

다.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변경 · 해제는 지정 신청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현 황

- 개정안 별표2의1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신청의 하자에 대한 신청자의 보완 기회 제한
  -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권 부여
  - 하자가 경미하여 보완 후 충분히 적법한 신청이 될 수 있음에도 신청을 반려하는 등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신청의 하자에 대한 신청자의 보완 기회 제공
  - 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반려에 앞서 신청자에게 보완 기회를 제공하여 보완 절차를 통해 적법한 신청이 되게 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 마련

【예 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별표 2의1]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제6조제4항 관련) 1.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 가. (생략) 나.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 절차 하자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 내역의 사실 여부 및 신청 절차 하자를 확인한 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신청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 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내역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 · 반려할 수 있다. 다 ~ 라. (생략) 2. (생략)	[별표 2의1]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제6조제4항 관련) 1.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다만, 신청 내역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본 평가서 [예시]의 개선권고안은 해당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유사 입법례】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 ④ (생략)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⑦ ~ ⑧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 · 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 ·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 2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31조의3(항만보안 위탁업체 지정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 · 검색과 제3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보안검색에 관한 업무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 ·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3.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경비 · 보안검색 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경비 ·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

현 황

- 개정안 제31조의3은 항만시설의 보안 · 검색업무 위탁업체에 대한 지정제도 도입과 관련한 규정 신설
  - 제31조의3제1항은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보안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별표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 3억 이상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같은 조 제3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업체로 지정받은 자 등에 대한 지정취소를 규정

〈 도입 배경 〉

- 배경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프랑스 IS테러 등으로 항만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항만보안 강화방안」 확정('16.2.25.)
- 현황 : 항만보안 인력의 약 52%를 민간 경비업체의 특수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체에 소속되어 높은 이직률에 따른 전문성 저하 등 문제 발생
- 내용: 항공보안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항만보안 분야에 도입하여 보안강화 여건 마련(*「항공보안법」제15조제3항)

문제점

■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 미부여

– 지정취소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해오던 위탁업체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부재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견제출, 청문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 관련 판례 〉

- 대법원 2004.7.8. 선고2002두8350판결【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78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 제4항, 제21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구도시계획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검토결과: 개선권고

- 지정취소 처분 전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청문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47호, 2017.6.3.)

제31조(경비 · 검색인력 및 보안시설 · 장비의 확보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비 · 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공개성

개요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 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도 포함

평가방법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 제공시기 · 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사례 1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④ (생략)

현 황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
  - 제정령안 제4조제3항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 이를 공개해야 함을 규정
    * 시행계획 내용 : 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추진 방향, 분야별 세부계획, 연구개발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등

문제점

- 시행계획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방법을 미규정
  - 담당자가 시행계획 공개를 임의 처리(관련 업체 한정 공개 등) 하거나 미공개 할 경우, 외부통제장치가 없어 연구개발사업자 선정 특혜 등 다양한 부패 발생 우려
    * (관련사례) 천연물신약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단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았음, 외부통제장치가 없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짐

〈언론보도 : '15.7.29. 라포르시안〉

천연물신약 사업 3천억 혈세 투입하고 성과는 '제로'... 건보재정 낭비까지 초래

– 감사원이 공개한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에 반영된 정부의 주요 선행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요 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단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았고 기초연구에서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 지원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지적

검토결과: 개선권고

- 국토교통과학기술 시행계획에 대한 공개 방법 명확화
  – 공개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계획의 공정성 · 객관성 확보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80호, 2016.6.3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사례 2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안 내용

-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 제14조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
  - 한국수어교육원은 한국수어 교육,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등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한 제반 활동 수행

- 평가대상 조문은 법 제14조제5항에서 위임한 한국수어교육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 중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명시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 · 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안) 제11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갖출 것
2. 강의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문제점

■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에 고려되어야 할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

– 교육 등 운영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지정 신청 절차에서 확인 불가

– 지정 신청기관의 인력 · 시설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부족한 인력 · 시설에 의해 학습자들의 불편 및 기관 지정절차의 불투명성 우려

– 기관 지정 담당자 또한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요건인 인력 · 시설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어려움

〈기관 선정 부적정 관련 자료〉

◎ 특수대학운영실태(대학원대학 등) 공개문(감사원, 2013.10)

• (미인가 학습장 운영 부적정) 학교를 신설할 수 없는 지역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습장을 신설한 대학 등 존재

검토결과: 개선의견

■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 시 시설 현황 기재하도록 서식 수정

– 건실한 교육 운영 및 기관 지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에 인력 · 시설 현황 추가 등 해당 분야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보완 필요

※ 수어 관련 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설 기준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기보다,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개선 권고

개선결과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8.4.)

■ [별지 제2호서식]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연도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례 3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③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정한다.

제정안 내용

- 법률 제37조제1항은 진흥원이 재원조달을 위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
>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 ·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대상 조문은 기부자의 기부금품 관련 장부 열람 권한 보장 및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진흥원이 정하도록 위임

문제점

-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확보 부족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 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기부금품 운용 불투명성 관련 자료〉

◎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천안함 피격 기부금 부적정 사용 사실 확인 (김재윤 국회의원, 2013.10)

• 기부금을 2010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부금 집행금액 총 3억 1,289만 원 중 25.4%를 지휘관 · 참모 격려금 및 회식비 73건과 함대 기념품 구입 14건에 목적 외 사용

◎ 기부단체 투명성 D등급, 불신 안 걷혔다 (코리아타임즈, 2015.12.21)

• 45개 대형 공익법인들 중 26개 단체 공시 양식 위반
• 홈페이지를 기본 정보공개 성실성, 재무보고서 접근성 등 5개 지표를 공동으로 조사해 100점 만점에 15점 단위로 등급 매긴 결과 평균 D등급

– 평가대상조문 제3항은 기부금품에 대한 사용실적 등을 장부로 갖추어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통제 장치 필요

– 평가대상조문 제4항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정한다고 하여 진흥원이 정한 바에 대한 공개 방안 미비

– 동 시행령안 제21조는 지원금의 관리 ·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기부금품의 경우 달리 규정할 타당성 미흡

※ 업무방법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라 진흥원이 동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는 기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② 그 밖에 지원금의 관리 ·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검토결과: 개선의견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품 모집 · 사용 투명성 제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장부 · 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⑤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9.23.)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예측 가능성

개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

-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부패행위를 예방

평가방법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 관련규정 이해의 용이성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예측가능성 판단
  - 모호한 기준 중의적·다의적 표현 등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재량을 행사하거나,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검토

사례 1 :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① 가입자는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 · 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현 황

- 개정안 제30조는 우편대체수표 분실 · 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경우 우편대체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편대체수표 예치금은 사고신고로 인하여 후일 우체국에서 발생될 관손 및 허위신고로 인한 선의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문제점

- 우편대체수표 예치금액 예측 곤란
  - 개정안 제30조제1항은 우편대체수표 분실 · 도난 시 납부해야 할 예치금의 금액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규정
  -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에 비해 예측가능성이 낮음
  - 고시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는 사유로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현재 우편대체수표 분실 · 도난에 따른 신고 시 적용되는 예치금 금액은 자기앞수표 분실에 따른 내부지침을 준용하고 있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우편대체수표 예치금 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현행 조문을 유지하여 우편대체수표 분실 · 도난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예치금 금액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9호, 2017.1.1.)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① 가입자는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 · 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사례 2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3조(난자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① ~ ③ (생략)

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증자의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별지 제54호 서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난자채취 이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은 별지 제55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라 난자를 채취한 경우 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동의권자의 요청에 따라 배아 · 난자 및 정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현 황

- 시행규칙 개정안은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평생 3회)을 위해 이력을 조회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배아생성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임신목적으로 체외 수정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 · 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현재 144개 기관이 지정 · 운영되고 있음

문제점

- 이력조회의 사유를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아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하 및 난자채취 빈도제한 위반 우려
  - 난자 기증자의 난자 채취 빈도 제한은 채취과정상 출혈 · 감염 및 불임 · 사망 등의 위험과 난자의 불법 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 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평생 3회로 하되,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하도록 규정
  - 이에따라 이번 규칙 개정안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채취 빈도 제한을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난자채취 이력을 조회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규칙 개정(안)은 어떤 사유로 난자채취 이력을 조회하는 지에 대해 상위법령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바,
    - 난자기증자 및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이력조회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빈도제한 위반 우려가 있음

〈 관련 사례 〉

'11년 381건, '12년 403건 등 정자 · 난자 불법 판매 적발 사례 매년 증가 (경향신문, 2014.2.1.)

- 국회 이목희 의원은 인공수정시술 동의서 검증을 각 병원에 맡기고 있어 허위증명서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불임 부부의 수정을 돕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

고학력 수준급 외모 'A'급 난자 1,000만 원 (일요서울, 2011.6.21.)

- 대구 모 산부인과는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신원 확인, 진료기록부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인적사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도 받아 보관

인터넷 난자거래 브로커 · 의사 검거 (KBS뉴스, 2011.6.14.)

- 산부인과 의사 남씨는 난자 채취와 이식 수술을 하면서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이력조회 시 난자 기증자의 동의 부재

– 난자기증 및 채취 이력도 개인정보에 속하는 만큼 사전에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 불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

검토결과: 개선권고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이번 법령 개정 시 반영사항]

■ 난자채취 이력 조회 실시이유가 빈도제한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해 시행한다는 점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개정안	개선안(예시)
제23조 (난자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①~③ (생략) 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증자의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별지 제54호 서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난자채취 이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은 별지 제55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난자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①~③ (좌동) 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증자의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해당 난자채취 대상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빈도 이상의 난자채취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 이력조회 시 난자 기증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시행규칙 및 별지 서식 개정

1) 시행규칙에서 난자채취 이력조회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현 행	개선안(예시)
제20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② (생략) ③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아생성에 이용되고 남은 정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2. 채취 및 체외수정 시술 과정과 그로 인한 위험성 및 부작용에 관한 사항 3.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0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② (좌동) ③ (좌동) 1.~3. (좌동) 4. 난자채취 이력조회에 관한 사항

2)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생식세포 기증 동의서)을 개정하여 이력조회사항도 동의를 받도록 개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
([ ]난자 [ ]정자)

(앞쪽)

관리번호	

배아생성의료기관명		
생식세포 기증자		생년월일
해당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수증자와의 관계		
상담자	성명	
담당의사	성명	

1.~7. (생략)

8.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난자채취 빈도제한(총 3회)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난자채취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설)

생식세포 보존 또는 연구용 제공 여부

구 분	보존 여부 및 기간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용 제공
난자	[ ] 즉시 폐기 [ ] 보존 (년)	[ ] 동의함 [ ] 동의 안함
정자	[ ] 즉시 폐기 [ ] 보존 (년)	[ ] 동의함 [ ] 동의 안함

난자 또는 정자의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연구이용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례 3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인증기관 운영 공간을 확보 할 것
2. 인증기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거나 인증기관이 파행 운영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인증기관 지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현 황

- 개정안 제16조의2제2항은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2690호, '15.5.29. 시행) 제16조의2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 체력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2690호, '14.5.28. 일부개정, '15.5.29. 시행)〉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문제점

- 개정안 제16조의2제2항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하위법령(부령)으로 정한다 하였으나,
  -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도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부재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지정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 미흡(시행규칙에는 처리절차만을 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사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시에는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령 제10조의3제2항, 제11조의2제5항)하나, 체력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절차 이외의 세부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부재

〈 체력인증기관 지정절차 〉

신청서 작성 (별지 12호 서식)	→	접 수	→	심사 (90일이내)	→	결 재	→	지정서 발급 (유효기간:3년)
〈지정신청서, 증빙서류〉		〈지자체〉		〈처리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처리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증빙서류 : 개정안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증빙서류

검토결과: 개선권고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절차 외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예측가능 하도록 (하위법령인)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지정 기준의 세부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이 법의 다른 기관 지정과 유사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 구체적 기준 마련
  - ※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인건비, 운영비 등)를 연간 3억원(1소당) 정도 예산 지원 가능하므로 특정기관 지정에 따른 특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37호, 2017.3.21.)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04 |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개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 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 · 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 · 연임 규정, 제척 · 기피 · 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 · 영리행위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자격요건의 구체성, 연임제한 규정의 유무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규정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 · 신뢰성 · 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 · 신뢰성 · 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 ·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사례 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3.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2년

②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현 황

- 개정령안 제8조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권한으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는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등급판정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 징수,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 ·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을 공단으로 하도록 규정
- 또한 제52조는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문제점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부재
  -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에 대하여 심의하며 그 의결은 장기요양급여 등 수급자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나
  - 심의 ·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의무 등 이해충돌방지장치 부재로 심의 · 의결의 공정성 확보 곤란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 해촉 규정 부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및 제53조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회의의 정족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개정령안은 간사 및 소위원회에 관하여 규정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규정이 부재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 곤란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부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제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부재로 한 위원이 계속하여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의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심의 · 의결의 객관성 · 공정성 저해 우려

검토결과: 개선권고

〈금번 시행령 개정 사항〉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위원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의무 등 심의 ·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 해촉 규정 마련

– 직무태만, 회피 의무위반 등 불법행위 시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재의 적정성 확보

〈추후 법률 개정 사항〉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횟수 제한

【예 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략)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0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개선결과

■ (시행령)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72호, 2017.6.3.)

제21조의2(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의3(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공단 이사장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사례 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조의3(사업구역심의위원회 구성 등)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교통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현 황

- 개정령안 제3조의3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제3조의3제4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법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 ·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 ·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사업구역의 지정 ·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문제점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부재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목적 · 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
  - 법 및 개정령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기 및 연임제한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 위원이 장기적으로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등 심의의 객관성 · 공정성 저해 우려

검토결과: 개선권고

-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마련
  -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75호, 2017.6.30.)

제3조의3(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사례 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9조의7(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①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제운용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공제운용계획의 수립 · 변경 및 수지결산
3.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한다.

현 황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관리 ·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은 화재공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운영위를 설치 · 운영(신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공제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공제운용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 · 개정
- 공제운용계획*의 수립 · 변경 및 수지결산
-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공제운용계획 포함 사항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수입계획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 그 밖에 공제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제점

- 위원회 심의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
  - 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제운용계획의 수립 · 변경 관련 하여 공제운용계획에는 공제사업 자금의 수입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 필요
  - 개정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어 특정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과의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될 소지가 있음

    ※ 공제사업의 주요 자금원은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부금과 공제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 등이므로 자금 사용은 투명성이 매우 요구

- 위원의 임기, 연임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 위원구성 등의 업무를 자의적으로 수행할 우려

〈 관련 사례 〉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불법, 비리, 특혜, 낙하산 인사 판쳐 ['14.4.29.머니투데이]
- 공제회는 무풍지대, 공통의 이해관계로 뭉쳐 회비로 운영되는 국내 공제회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 만연 ['16.4.27.연합인포맥스]

검토결과: 개선권고

- 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마련
  - 특정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시 해당위원 심의 배제

-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마련
  - 장기위촉 배제를 통한 위원회의 객관적인 운영 제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7호, 2017.6.3.)

제9조의7(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8(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개요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위해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평가

평가방법

-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사례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6조(여성기업 확인 등)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여성기업 해당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 확인의 현장조사 실시에 필요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여성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현 황

- 여성기업 해당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있을 시 법 제20조의 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확인(신설)
  -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

※ 여성기업의 정의 :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고, 대표권한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인 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은 자체 물품 · 용역 총 구매액의 5% 이상을 여성기업에 할당
– 국가 및 지자체의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보증제도 운영
–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 근로자 대상 연수 및 지도사업

문제점

■ 부정 · 불법을 행한 민간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및 각종 자금지원 등의 정책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여성기업 여부 확인 및 자격 취소의 업무는 매우 공정성이 요구

– 그러나 민간위원이 대상 업체 로비를 받고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정 · 불법 행위 발생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여성기업 대상 현장조사의 공정성 · 책임성 확보 곤란

〈 관련 사례 〉

"노모 · 딸 바지사장 앉힌 위장 여성기업 솎아낸다.('15.9.7.머니투데이)

– 여성기업 기준이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로 강화되고, 적발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해선 벌금 등을 매기는 벌칙조항도 신설되는 개정안 국회에 제출, 중기청은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적격 여성기업 비율은 절반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이하 생략)

개선권고

〈추후 법률 개정 시 반영 사항〉

■ 전문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추후 상위법 개정 시 벌칙조항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 기존 상위법 제20조의5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참조

【예 시】

법률 개정사항

법률	개선의견(예시)
〈신 설〉	제○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평가위원중 민간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

【유사 입법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사례 2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평가대상 조문

해당 조문 없음

현 황

- 법 제14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
  - 전문인력 양성사업, 정보체계 구축,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지정 예정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에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취소 규정 부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요건 등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적절한 대처 어려움

법령 입안 · 심사 기준(법제처)

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지정요건, 취소요건, 비용부담, 감독규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규정해야 함

검토결과: 개선의견

- 전담기관 지정취소 규정 신설
  - 전담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

※ 지정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었음이 판명된 경우는 당연취소 사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대통령령 제28067호, 2017.6.3.)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 3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로지원금)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지원금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현 황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규정을 신설

– 소득기준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급토록 변경하는 한편,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른 시행령 개정

※ '위로지원금' 관련 개정법률 조항

– 법 제9조제1항 :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법 제9조제3항 :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률에 따른 한센인 피해자 지원내용 〉

- 생활지원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매월 피해자 개인당 15만원(국비 100%)
-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금액

■ 법률 개정(생활지원금→ 위로지원금) 배경

– 한센인에 대한 오해 및 편견 등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국가에 의한 격리수용 정책으로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되어 감금 · 단종 · 폭행 등의 인권유린을 경험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약 64백여건의 피해 사례확인(기간: 광복이후 1970년대까지)

–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7]

–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토록 법률을 개정

〈 한센인 관련 통계 및 지원현황 〉

- 한센인 : 총 11,303명 (국립소록도병원 565명, 재가 6,673명, 정착농원 91개소3,645명, 보호시설 6개소 420명/ '14년)
- 피해자 : 3,884명 ('16.1월)
- 위로지원금 지급 : 3,284명 ('16.1월)
- 의료지원금 지급 : 3건('12년), 4건('13년), 1건('14년), 0건('15년)

7) 보건복지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산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발췌 · 인용

문제점

■ 비밀 누설을 통한 사익 추구 등 방지를 위한 부패통제 장치 부재

–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 문서 · 자료 등을 사익 추구 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 체계 필요

〈 관련 사례 〉

➔ **'과거사 수임비리' 민변 변호사 유죄 (한국일보, 2016.2.17.)**

– 과거사 진상규명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이 유죄판결

– ㅇㅇ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총 40건의 파생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 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ㅅㅅ변호사는 과거사위 활동 후 관련사건을 수임해 1억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

■ 부정 · 불법 위원 제재 규정 부재

– 위원회 위원이 피해사건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로비를 받고 피해자로 결정하는 등 부정 ·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부정 · 불법 위원을 처벌하는 장치 미비

검토결과: 개선권고

〈추후 법률 개정 시 반영사항〉

■ 비밀준수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제재

(1) 비밀준수 의무 부과

– 위원회 심의 · 의결, 조사과정에 참여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준수 의무 부과

※ 과거사 피해 관련 법률(「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부과

(2) 비밀준수 의무 부과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 비밀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규정 마련

–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마련

※ 과거사 피해 관련법률은 모두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참고자료]

'과거사 수임비리' 민변 변호사 유죄 (한국일보, 2016.2.17.)

위원회 책임성 · 공정성 강화를 위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2015.11.12. 시행)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되는 인 · 허가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신설

공무원 의제여부에 다른 뇌물수수자 처벌 수준

– 공무원 의제 근거규정의 유무에 따라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기준이 달라짐

–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을 경우, 뇌물수수자가 특가법상의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등 부패 사각지대가 발생

〈 공무원 의제 여부에 따른 뇌물수수자 처벌 수준 〉

근거법	구분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無
형법	죄명		수뢰 등 (형법 제129조~제132조)	배임수죄 (형법 제357조)
	처벌 (단순수뢰 기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수수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년이상의 유기징역	없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수수액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	

【예 시】– 비밀준수 의무 부과 및 위반시 벌칙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조(비밀준수 의무) ①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 문서 ·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조(벌칙) 제△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칙의 수준은 과거사 피해 관련 벌칙에 준하여 예시로 들었음

【예 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02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2. 부과·징수 업무
3. 보조·지원 업무
4. 위탁·대행 업무
5. 행정조사 업무
6. 단속·점검 업무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8. 인사 업무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01 |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사례 1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3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전문기관
2. 「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학회 또는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학교
5.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②~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합리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교육기관 지정 배경
  - 진료과정 등에서 각종 실수를 유발하거나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실시

-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기관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 등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일정기간 재지정 금지

문제점

- '교육전문기관'으로 규정하여 모든 교육기관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자안전과 관련한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 지정 후 지정취소 및 취소 시 1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 금지 규정 등 지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해당 법률에 규정해야 함
  - 시행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사항에 대해 규율하는 만큼 시행규칙에서 지정취소, 재지정 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교육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과도한 준수부담을 부과하는 것임
  - 또한 시행규칙인 만큼 행정기관이 내부 결정사항으로 지정취소 등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 로비 등 부패발생 우려

〈 지정취소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활동보조인 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보조인교육기관으로 지정 및 지정 취소 규정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 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항공안전법
–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검역법
– 최근 2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 경우
–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공연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업무정지 기간중에 안전검사 등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등 지정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지정취소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과 관련한 교육기관 지정취소를 하기 전 합리적 처분을 위해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 필요 (참고의견)

검토결과: 개선권고

〈이번 시행규칙 제정 시 반영사항〉

- 교육전문기관을 구체화하여 환자안전 교육 효과성 제고
  - '교육전문기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으로 구체화
-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금지 규정 삭제
  -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지정취소 및 일정기간 지정신청 금지 규정은 준수부담에 있어서 과도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추후 법률 개정 시 반영사항〉

- 교육기관 지정취소를 법률로 규정하여 준수부담 합리화
- 일정기간 지정신청 금지 규정을 법률로 규정

【예 시】 – 교육전문기관 구체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의견
제13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전문기관 2. 「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학회 또는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학교 〈신 설〉	제13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1. 「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2.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학회 또는 비영리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학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4.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교육을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예 시】 – 지정취소 및 일정기간 지정신청 금지를 법률로 규정 (환자안전법)

개정안	개선의견
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①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 교육외에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인력이나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 시간 · 내용 ·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 시간 · 내용 ·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례 2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생 략)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경제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 경제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문제점

■ 위반 횟수의 기준이 되는 행정처분 기준일 불명확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일을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로 하고 있으나 최초 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의 경우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행정처분을 늦추기 위한 로비 소지가 있음

〈참고〉 행정처분 기준 적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16.1)

舊「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되,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구청에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횟수 산정 시 기존 '행정처분일'로부터 '적발일'까지로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현행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영업정지 90일이 아닌 40일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5개 업소에 대해 20일~50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

적발일	적발일	위반규정	실제처분	정당	차이
12. 2.21.	12. 2.2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영업정지 40일	–	–
12.11.11.	12.11.11.		영업정지 4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50일

■ 행정처분의 감경사유 불명확

– '경제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단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무분별하게 적용될 우려

검토결과: 개선권고

- 위반 횟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 명확화
  - 1차 위반 시 기준일은 '행정처분을 한 날', 2차 이상 위반 시 기준일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09호, 2017.1.28.)

[별표2]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생 략)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02 | 부과·징수 업무

사례 1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8조(수수료 징수 등) ① 위판장개설자, 중도매인 등이 징수대상자에게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 중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2. 위판장개설자가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 취급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3. 중도매인이 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② 위판장의 시설사용료는 위판장개설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위탁수수료와 중도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2.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제정안 제18조에서는 위판장개설자, 중도매인 등은 징수대상자에게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위판장의 시설 사용료는 위판장개설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는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 개설자, 중도매인 등이 징수하는 위판장 사용료, 부수시설 이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조 업무규정에 규정할 사항이며, 법률 제26조[9]에서는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위판장을 운영한 경우에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

〈 위탁수수료 등 징수 규정 〉

구분	징수내용	금액
시설사용료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 중 사용자로부터 징수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
위탁수수료	위판장개설자가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업무규정으로 정함)
중개수수료	중도매인이 수산물의 매매을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거래액의 일정 비율)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업무규정으로 정함)

문제점

■ 위법 · 부당한 수수료 등의 징수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단 부재

– 위판장개설자, 중도매인 등이 출하자, 매매한 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적정한 처분이 어렵고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부터 출하자 등을 보호하기 어려움

9)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위판장을 운영한 경우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사례 〉

광주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이 규정을 어기고 위탁수수료(하역비 포함)를 부당하게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출액 대비 평균 1.1%로 지난 10년 간 징수한 하역비만 320억원에 달했다.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1) 의원은 12일 '각화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42조)에는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위탁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광주시 조례는 이 위탁수수료의 상한비율을 7%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중략) (연합뉴스, 2015. 11. 12.)

검토결과: 개선권고

- 수수료 등의 징수 또는 징수제한에 대한 규정 신설
  - 수수료 등의 징수(또는 징수제한)에 관한 규정 마련
  - 수수료의 요율 등 수수료 등의 징수(또는 징수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수료 등의 징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 수수료 등의 징수(또는 징수제한)에 관한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 수수료 징수와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 개정사항이며, 벌칙은 행정형벌 또는 행정질서벌(과태료)을 위반행위의 정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

- 수수료 등의 징수 위반에 대한 개별처분 기준 마련
  - 위법 · 부당한 수수료 등의 징수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위판장개설자에 대한 적용부분)
  - 위법 · 부당한 수수료 등의 징수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중도매인에 대한 적용부분)

【예 시】 – 법률 개정사항

현 행	개선의견
〈신 설〉	제△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위판장개설자, 중도매인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 중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2. 위판장개설자가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3. 중도매인이 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신 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생략) △. ..... △. (생략)

【예 시】 – 시행규칙 개정사항

<table>
<tr><th>제 정 안</th><th>개선의견</th></tr>
<tr><td>[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법 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 기준
가. 산지위판장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생략)</td><td>[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법 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 기준
가. 산지위판장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table>
<tr><th rowspan="2">위반사항</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처분기준</th></tr>
<tr><th>1차</th><th>2차</th><th>3차</th></tr>
<tr><td>△)법 제△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td><td>법
제△조
제△항</td><td>업무
정지
△일</td><td>업무
정지
△일</td><td>업무
정지
△일</td></tr>
</table>
나.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table>
<tr><th rowspan="2">위반사항</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처분기준</th></tr>
<tr><th>1차</th><th>2차</th><th>3차</th></tr>
<tr><td>△)법 제△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td><td>법
제△조
제△항</td><td>업무
정지
△일</td><td>업무
정지
△일</td><td>업무
정지
△일</td></tr>
</table></td></tr>
</table>

※ 본 평가서의 개선권고 [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음

사례 2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시 ·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나. 시 ·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입주기관이 법 제5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1,000
나. 법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 등을 양도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	300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법 제60조에 따라 산 · 학 · 연 클러스터 입주승인이 취소된 기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입주승인 기관이 클러스터*의 부지 · 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신고 없이 양도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 개정령안 별표1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클러스터 :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산업집적지 (생산기업, 연구개발 기업, 각종 지원 기업 등)

문제점

- 과태료 가중 사유 불명확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단기준이 포괄적이어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무분별하게 적용 가능
  - 특히, 부과권자가 정부부처가 아닌 시 · 도지사이므로 과태료 처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곤란하여 처분 대상자는 과태료를 예측할 수 없어 가중 처분을 막기 위해 청탁 등 부패 사례 발생 가능

    * (관련사례) 지자체 담당자의 자의적 과태료 부과 사례 발생

〈언론보도 : '15.11.13. 부산일보〉

엉터리 과태료 부과한 ○○구청

- 부산의 한 지자체가 교통 질서 위반 과태료를 제멋대로 부과했다가 뒤늦게 정정사례 발생
- 한도를 초과한 과태료에 대한 민원 항의에 대해 담당자는 '지방자치제인데, 지자체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

검토결과: 개선권고

- 과태료 부과 일반 기준 규정
  – 위반 회수 적용 기준 일을 명확히 규정

- 과태료 가중사유 구체화
  – 시 · 도지사 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해당 분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가중사유 기준을 제시

- 위반 횟수 별 가중 금액 명확화
  – 위반 횟수 별 금액을 정하여 과도한 과태료 재량권한을 축소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2017.1.1.)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시 ·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시 ·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법 제6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03 | 보조·지원 업무

사례 1 :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1조(포상 및 시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 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 · 시상 할 수 있다.

1. 조경분야 확산 · 보급 등을 통하여 생활 조경분야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2. 조경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조경분야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자
3.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조경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자
4.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 조성에 이바지한 자
5. 그 밖에 조경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상 · 시상을 할 경우에는 조경 관련 기관 ·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 단체 · 기업 및 수상자에게 조경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경우 또는 조경 관련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7조)
  -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제정령(안)은 포상 · 시상자의 선정요건 및 대상자 선정시 조경 관련 기관 ·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 및 수상자에 대한 상금 지원 근거를 규정

문제점

- 조경분야 유공자 선정절차 등 포상 관련 세부절차 미규정
  - 선정된 자에 대해 포상 · 시상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세부 규정이 없어 예측가능성 저하

검토결과: 개선의견

- 포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사항에 대해 사전 공고하도록 개선

【예 시】

제정안	개선권고(예시)
제11조(포상 및 시상)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1조(포상 및 시상)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사례 2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2조의2(지원금 회수 및 중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때
2. 법 제14조4항 단서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전직 또는 전수활동 중단 등으로 해당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평가항목

- 재정누수 가능성

현 황

-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전수자의 지원금 회수 및 중단 규정 신설
  - 개정안 제22조의2는 상위법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제4항 및 제6항, 제8항, 제9항과 관련하여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전수자의 지원금에 대한 회수 및 중단 규정을 신설

〈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이하 "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받고 있는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식품명인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회수근거 미흡

– 제22조의2제1항과 제2항과 같이 회수 및 중단사유에 대해 '회수할 수 있다', '중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당연히 자금회수 · 중단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량사항으로 규정

⇒ 실제 업무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실제 회수 · 중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실질적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또한, 회수업무 세부 절차, 미납시 강제집행 수단 등 실제 회수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 부재로 인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요구되는 이행력 확보 미흡

- 추후 상위법률인 '식품산업진흥법' 우선 개정한 후 시행령 관련조항 개정
  - 현재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 제6항 및 제8항은 회수 및 중단사유에 대해 '회수할 수 있다', '중단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자금 회수 및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추후「식품산업진흥법」개정 시 제14조 제6항 및 제8항 규정에 대해 필요적 회수 · 중단 대상으로 개선 필요

검토결과: 개선권고

〈추후 법률 개정시 반영할 사항〉

- 「식품산업진흥법」의 지원금 회수 및 중단 관련 조항 강화 및 회수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신설

【예 시】

현 행	개선권고안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⑥ _____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때 2.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⑧ _____ _____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_____ _____ ___중단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 추후 법률 개정이후 시행령에 반영할 사항 〉

- 「식품산업진흥법」의 지원금 중단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

【예 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22조의2(지원금 회수 및 중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전직 또는 전수활동 중단 등으로 해당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제22조의2(지원금 회수 및 중단) ② 법 제1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_____ _____ 2. _____ _____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04 | 위탁·대행 업무

사례 : 「국세징수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8조의8(전문매각기관의 지정) ① 국세청장은 2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전 2년간 법 제6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한 경험이 평균 10회 이상(직전 2년 내에 설립된 기관의 경우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절차 등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8조의9(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절차 등) ① 세무서장은 제68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매각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술품등이 압류된 납세자는 세무서장에 대해 전문매각기관을 통하여 매각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 황

〈 법률 규정 사항 〉

-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해전문성 ·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 예술품의 경우 예술적 · 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됨
    ※ 기존에는 예술품에 대한 공매업무를 부동산 등 일반적인 압류품과 동일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고 있으나, 예술품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공매대상 예술품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지 못해 국가재정 수입 감소 초래

- 「국세징수법」 제61조의2제3항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시행령 규정 사항 〉

- 개정령안 제68조의8 제1항은 예술품 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국세청장은 2년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지정 · 공고토록 규정
  -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절차 등 전문매각기관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 ➔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지정 요건
> – 직전 2년간 예술품등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한 경험이 평균 10회 이상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 개정령안 제68조의9 제1항은 세무서장은 지정된 전문매각기관 중 하나를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예술품등이 압류된 납세자 역시 세무서장에게 전문매각기관을 통하여 매각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전문매각기관으로 지정된 복수의 기관 중에서 하나를 세무서장이 매각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행기관 선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 절차에 대한 내용 부재
  -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예술품 등 매각대행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발생 및 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관련업체의 부정청탁 가능성 내재

> 공매대행 관련 부패발생 언론보도
>
> 차량공매 대행업체로부터 뇌물 세무공무원 2명 집행유예('15. 9.30,연합뉴스)
> -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자동차공매대행업체로부터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차량공매업체로부터 금품 1천 950만원을 수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 B씨는 2011년 자동차공매대행업체와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뒤 매년 협약을 연장하는 대가 등으로 3천여만원을 수수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개정안과 같이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절차 등 전문매각기관의 지정 ·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할 경우 행정규칙 형식이 아닌 업무담당 부서에서 내부결재 등으로 결정 가능
  - 전문매각기관, 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자가 전문매각 기관 지정, 매각대행기관 선정, 매각절차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 투명성이 저하되고 부패발생 가능성 증가

검토결과: 개선권고

- 지정된 전문매각기관 중 예술품 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선정절차, 매각대행 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절차 등 전문매각기관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행정규칙 형식으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4호, 2017.7.1.)

제68조의7(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②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1]한다.

1)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국세청고시 제2017-20호, 2017. 7. 5.)

05 | 행정조사 업무

사례 :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④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 없이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제4항에 따른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④ 중앙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 환경공학 · 수문학 · 수리학 · 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 · 하천 · 도시 · 환경 · 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평가항목

- 접근의 용이성, 재량 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법률 제50조의3은 행정청이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① 사전 통지 · 공고 절차 부재로 자의 · 편의적 재량권 행사 우려

- 행정청의 장이 장애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승낙 없이 제거 또는 변경할 있도록 할 경우 국민권익 침해 우려
  - 공익목적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인하는 상대방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 그러나, 개정안은 막연하게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주관적 사유를 근거로 장애물의 소유 · 점유자 부재 시 행정청 재량에 따라 임의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
  - 처분의 사전통지(사전계고나 공고, 자진철거 기회 부여) 없이 행정청 재량으로 임의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헌법 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 · 자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형태의 비닐하우스나 농막, 창고 등 영농시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점유자 부재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임의 철거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 발생 우려

    * 국토부에 '15. 10. 21. 유선으로 확인한바, 하천부지에 설치되는 장애물은 주로 영농시설(비닐하우스, 농막, 농자재보관창고)과 컨테이너, 조경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주민편의시설이 다수임.

②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성 결여

- 법 제31조제4항제3호는 민간위원의 자격을 '수자원개발 · 하천 · 도시 · 환경 · 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위원 선정과정에서 자의적 재량권 행사 우려가 있음.

- 특히, 본 위원회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 · 변경 ·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국민의 사유재산이 하천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등 국민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적절한 위원 선정 시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

③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부재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시 국민이나 기업의 토지 이용 · 개발 및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
  - 위원회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개인 · 단체 · 기업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로비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은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 절차 등 심의의 공정성 ·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결여

    ⇒ 본 법률(안)은 부정 · 불법 위원을 사전에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사후에 처벌하여 위원회 심사 · 의결의 객관성 ·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검토결과: 개선권고

① 사전통지 · 공고절차 마련으로 절차적 정당성 및 국민권익 침해 최소화

- 장애물을 긴급히 제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통지방법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근거 신설
  - 긴급히 제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사항을 법 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포함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공고* 후 제거 또는 변경토록 하위법령에서 규정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게시판에 게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장애물을 제거 · 변경토록 규정

【예 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11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①~③ (생략) ④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 없이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①~③ (생략) ④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②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위원 선정 방지

– 본 법률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행령 제정 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위원 선정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심사 전문성 등 확보

【예 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19조(중앙수자원관리위원회) ①~③ (생략) ④중앙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 환경공학 · 수문학 · 수리학 · 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 · 하천 · 도시 · 환경 · 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9조(중앙수자원관리위원회) ①~③ (생략) ④ 중앙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 환경공학 · 수문학 · 수리학 · 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 · 하천 · 도시 · 환경 · 법률 및 경제분야에서 ○년 이상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③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마련

④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규정 마련

⇒ 본 법률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행령 제정 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장치를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등 확보

【예 시】

제정안	개선권고안
〈신 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의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06 | 단속·점검 업무

사례 : 「소방장비관리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8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품질, 물성(物性), 외관(外觀), 치수, 수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개정안 제8조제1항은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 구매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4항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 및 검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 전문검사반을 구성하는 관계 전문가의 구체성 결여
  - 관계 전문가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납품될 제품과 관련 없는 전문가 선정으로 인해 부실 검사 및 검수 우려가 있으며,
  - 또한 납품업체와 담당자가 결탁하여 임의로 전문가를 선정한 후 부실한 제품이 납품되게 할 개연성도 있음

〈언론사례〉

갖다 주는 대로... 소방관 의복 납품과정 허술했다.

(2015. 3. 6., 한국일보)

소방서 납품업체가 특수방화복 5,000여벌 외에 기동복, 근무복, 방한복, 점퍼 등 소방관들의 일반 의복 6만여점을 품질검사 통과 후엔 미검사제품으로 바꿔 소방서에 전달

검토결과: 개선권고

- 전문검사반을 구성하는 관계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

【예 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8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① ~③ (생 략) 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8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_____ _____ _____. ⑤ (개정안과 같음)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07 |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사례 1 : 「관세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4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 ·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현 황

-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현행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가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로 통합('16.4.1시행)
  -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는 관세사 시험 등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 및 징계처분 · 등록거부 등에 대해 심의 · 의결 권한을 가진 자가 결탁하여 임의로 전문가를 선정한 후 부실한 제품이 납품되게 할 개연성도 있음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법 제6조의4)

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3.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문제점

- 시행령 개정안 제34조의2에서는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 위원 본인 및 친족 등이 징계의결 대상인 경우 사적 이해 개입 방지 및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를 규정하였으나,
  - 회피조항이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위원의 친족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의 직원 등이 징계의결 대상자인 경우에도 회피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제척하지 않을 경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힘듦

- 또한 위원으로 위촉 된 후 비위사실이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자에 대해 해촉할 수 있는 규정 부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16.8.12 시행)

검토결과: 개선권고

-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회피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 시행령 개정안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회피의무 부과

- 위원의 비위사실이 있거나 회피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46호, 2017.7.1.)

제5조의5(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 ·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의3(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관세 전문가로서 관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또는 2명
4.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관세사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또는 3명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관세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사례 2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9조(경영평가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로 구성한다.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 · 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1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규모 · 계속영업 기간 · 경영성과 또는 자본상태 등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1명
5. 금융, 법률, 경영 등에 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1명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6조 제1항[10]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위임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법률이 위임한 구조조정 현황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6조(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① 공동관리기업과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리절차의 효율성, 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점

- ‘경영평가위원회’는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간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 절차의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는 기구로 동 위원회의 평가결과가 기업 회생에 중요
  - 이런 연유로 금융위원회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요구토록 하고 있음 (법 제34조제1항제7호)

    ※ ‘경영평가위원회’는 공동관리 절차를 지속시켜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회는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 중단여부를 결정

- 시행령 개정(안)은 위와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외부 전문평가 기관에 소속된 자…”로 모호하게 규정

- 폭넓고 모호한 자격요건은 평가 시 특정기업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는 부적격자를 위원으로 선발하여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 바,
  - 위원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 ·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당하게 노력한 기업이 평가를 통해 회생될 수 있는 체계 마련

검토결과: 개선권고

-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 ‘외부 전문평가기관’ 이라는 모호한 조항을 대체하여 기업가치 평가, 회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으로 구체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4.29.)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다.

08 | 인사 업무

사례 1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평가대상 조문 없음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개정안은 징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군무원인사법」에 상향 · 규정[11]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었던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조문을 삭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개정안 이전)

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① 징계권자는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군무원인사법」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④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법률 제13501호, 2015. 9. 1. 개정, 2015. 12. 2. 시행〉

문제점

- 징계부가금 감면 처분에 대한 절차규정 미비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처리될 우려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처리될 우려 및 절차상 하자문제 발생 소지 내재

    * 개정된 「군무원인사법」에서 규정한 '징계처분등'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말하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징계처분등'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또는 감면처분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한 절차 규정이 삭제됨

〈현행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처분 절차〉

징계권자	→	징계위원회	→	징계권자
징계의결 요구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요구		의결 · 송부 (30일)		처분 및 감경처분(15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및 감면처분(15일)

검토결과: 개선권고

- 징계부가금 감면 처분에 대한 절차 규정 마련
  -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처리 절차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4.29.)

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① 징계권자는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례 2 :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41조(가산점) ① ~ ④ (생 략)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명부작성권자가 도서벽지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 · 면 · 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평정 및 작성 기준을 정함
  -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이외에 가산점이 있으며, 가산점에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이 있으며,
  - 공통가산점은 연구학교(총합계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총합계 0.75점), 직무연수(최대 0.12점), 학교폭력 예방 · 대응(총합계 2.0) 경력으로 최고 4.12점이며,

– 선택가산점은 도서벽지 및 농어촌 근무경력과 승진명부작성권자가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의 합계로 최대 10점까지 인정되며, 각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은 명부작성권자가 정하여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도록 규정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41조(가산점)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②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③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 · 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 · 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제4호의 가산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일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 · 면 · 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⑥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⑦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⑧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⑨ 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① 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문제점

- 선택가산점 부여와 관련한 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부재
  - 선택가산점은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항목 간 난이도 등에 따른 항목별 배점 및 점수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 도서벽지 · 농어촌 중 가산점 해당지역의 결정과 선택가산점으로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의 결정 또한 승진명부작성권자가 자의적 ·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항목별 배점 및 점수 산정 기준도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정 시마다 기준의 변동으로 인한 피해자 또는 특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특혜발생 가능성 또한 상존함

검토결과: 개선의견

■ 선택가산점 부여 관련 항목별 배점 및 산정 기준 등 마련

– 승진명부작성권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선택가산점에 대한 항목 및 점수 산정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공무원의 승진 결과에 대한 공정성 · 객관성을 담보

【예 시】

현 행 법 령	개선권고(예시)
제41조(가산점) ① ~ ④ (생 략)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명부작성권자가 도서벽지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 · 면 · 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제41조(가산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가 도서벽지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 · 면 · 동지역의 농어촌 중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제3장
현행 자치법규 평가 사례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방안

제1절 추진배경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투명한 사회)
- 2016년도 국민권익 정부 3.0 과제(투명한 정부)

▶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1] 제도를 도입 · 운영

■ 지자체의 경우 1999년부터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한 이후 민간위탁사무수 및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수는 '15년 9,556건으로 추정(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예산규모는 ('05년) 5조 1,647억원 → ('14년) 12조 2,777억원으로 증가(행자부 재정고 홈페이지)

▶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자체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조례를 운영하여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위탁 계약, 위탁료 산출, 관리 · 감독 분야에서 부패유발 및 재정누수 요인이 내재

• ○○구청은 전년도 운영수익을 횡령한 수탁업체와 별다른 제재 없이 재계약, 민선 지자체장은 수탁업체인 상인회를 외면하지 못하고, 상인회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 [○○뉴스, '16. 2월]

⇒ 이에,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

1)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2절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01 | 추진경과 및 현황

추진경과

- '16.1~3월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사전 법령조사
- '16.4~6월 공영주차장 관련 법령 및 현장 실태 조사
- '16.7~8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련 조례 전수조사(서면조사)
- '16.8~9월 법률 및 관계분야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수렴)
- '16. 10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 마련

실태조사 개요

- 현장조사
  - 조사기간 : '16.4월 ~ '16.6월 중
  - 대상기관 : 3개 지자체(광역 1, 기초 2)
  - 조사방식 : 자료 조사 및 현장 면담(공영주차장 소관 부서 및 지방공사 · 공단 등 담당자)

- 서면조사
  - 조사기간 : '16.7.18. ~ '16.8.19.(1개월간)
    ※ 조사통보 및 지자체 자료 제출(7.18.~7. 29.) → 제출자료 보완 및 통계 작업(8.1.~8.19.)
  - 대상기관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 조사방식 :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관련 조례 전수조사('15.12.31.기준)

주차장 조례 및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15년 기준)

-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자체 중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235개(광역 9, 기초 226)

  ⇒ 주차장 조례가 있는 23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또한, 230개(광역 7, 기초 223) 지자체가 14,57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 운영 중, 그 중 176개 지자체가 6,108개소를 위탁운영 중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 지자체 현황〉

합 계 (단위:개)		서울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	7	1	1	1	1	–	–	–	1	1	–	–	–	–	–	–	–	1
기초	169	25	25	8	10	5	5	5	–	30	13	6	11	3	4	14	14	–
합계	176	26	26	9	11	5	5	5	1	31	13	6	11	4	4	14	14	1

– 위탁운영 중인 6,108개소 중 4,369개소(71.5%)는 지방공사 · 공단 직영, 1,256개소(20.6%)는 지자체에서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 483개소(7.9%)는 지방공사 · 공단에서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 있음

※ 전체 723,238면 중 위탁 중인 주차면수는 368,108면임(50.9%)

〈지자체 공영주차장 운영주체별 주차장 수〉

합 계 (단위:개소)	지자체 직영	위 탁			
		소계	지자체 → 공사 · 공단(4,852)		지자체 → 민간
			공사 · 공단 직영	공사 · 공단 → 민간	
14,573	8,465	6,108	4,369	483	1,256

02 | 문제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

■ 현장 ·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공영주차장 문제 파악

– (계약 및 절차) 수탁기관 선정, 갱신계약 및 평가 등

– (위탁료 산출) 위탁료 산출 여부, 산출 기준 및 방법 등

– (관리 · 감독)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 현황, 제재 등

■ 관련 법령[2]의 부패유발요인 분석방법

– 공영주차장 위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수직적 분석

– 계약방법, 위탁료 산출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수평적 분석

법령 체계		주요 내용
법령	법 률(주차장법)	• 주차장 정의, 노상 ·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위탁)관리 •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자치법규	주차장 조례	• 위탁의 근거, 선정방법, 계약, 위탁료 산출 • 위탁 기간, 관리감독, 계약 해지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계약방법,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취소
	공유재산 조례	•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계약 갱신 및 평가, 관리 · 감독

⇒ 부패영향평가는 공영주차장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조례'를 중심으로 평가
(필요시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조례 등 관련 사항과 연계하여 보완 · 정비)

2) 이하 에서는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지칭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군) 주차장 (설치 · 관리) 조례」는 「주차장 조례」, 「△△시(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공유재산 조례」, 「△△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민간위탁 조례」라 함

【참고】 공영주차장 위탁 제도 및 관련 법령

개념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지자체의 장이 설치 ·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설치) 소관 행정구역내에 지자체장이 특별회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 지자체 직영, 지방공사·공단 직영 및 민간에 위탁 운영

※ 수탁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경쟁, 제한 및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

- 지자체의 장은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접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자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5조)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소관 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별 자치법규(조례)에 규정

– (기본법)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 주차장 정의, 주차장 설치 · 관리, (위탁)운영 등

– (자치법규) 주차장 조례, 민간위탁조례, 공유재산 조례 (지자체)
  * 위탁근거, 위탁기간 및 연장, 위탁료 산출, 주차요금 징수방법, 지도 · 감독 등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지방공기업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	개선방안
1. 위탁료 관련 규정의 객관성 미흡	1. 위탁료 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1–1 위탁료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위탁료 산출	1–1 위탁료 산출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객관성 · 투명성 제고
1–2 임의의 기간에 위탁료를 산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저하	1–2 정기적인 위탁료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2. 갱신계약의 투명성 미흡	2. 평가를 통한 갱신계약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2–1 갱신계약에 대한 특혜 시비 발생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미흡	2–1 갱신계약의 평가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특혜가능성 사전 차단
2–2 자의적 평가방법 결정으로 인한 평가의 신뢰도 저하	2–2 갱신계약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회 제도 도입
3. 부실한 관리 · 감독에 따른 위탁관리 부실화	3. 구체적 관리 · 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 내실화
3–1 형식적 관리 · 감독으로 위탁관리 부실화 초래	3–1 구체적 관리 · 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의 실효성 확보
3–2 구체적 제재규정 미흡으로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곤란	3–2 구체적인 제재규정 마련으로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4. 수의계약 근거 불명확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재위탁 규정	4.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 및 재위탁 규정 개선
4–1 선정방법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특혜 시비 발생	4–1 수의계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특혜 시비 해소
4–2 법령에 근거 없는 재위탁 규정	4–2 법령에 근거 없는 재위탁 규정 개선

제4절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01 | 위탁료 산출 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관련 보도사례

- 지자체마다 위탁료 산정기준이 제각각이며, 일부 지자체는 휴일도 위탁료에 포함, 위탁료 산출기준에 영업일수, 영업시간 등을 적용하면 위탁료의 60%가 거품으로 풀이,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 마련 필요 [○○일보, '14.1월]

- △△의원은 "△△공사가 3년마다 재위탁하는 유료주차장 11곳은 수입이 최소 6억6천만~8억6천520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2013년 수탁단체들이 납부한 임대료는 5천300만원에 불과하다며, 관행적인 계약방식 때문에 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일보, '15. 1월]

평가대상 조문 : 주차장 조례

위탁료 산출을 위한 객관적 기준 부재 조례 미제정 111개 지자체(47%)

제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중략)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생략)	(생략)	(생략)
비영리공익 법인의 경우	(생략)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	(생략)
마을공동체 , 비영리자원 봉사단체	(생략)	군수가 정하는 금액	(생략)
기타의 경우	(생략)	입찰가격	(생략)

1) 위탁료 산출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객관성 · 투명성 제고

현 황

-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47%(111개)가 위탁료 산출에 대한 규정 없이 위탁금액을 임의로 산출

> ➔ 지방공사 ·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4,369개소)은 수입과 지출이 100% 파악되고 있으나,
>
> ➔ 민간업체에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1,739개소)은 25%(435개소)만이 수입과 지출이 파악되고 있고, 그 중 149개소만이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위탁료가 산출되고 있음('16년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위탁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있는 124개(53%) 지자체 중, 15개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등과 같이 모호한 기준을 사용

> ➔ ○○시는 '15년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근거로 무상 위탁('16년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감면 · 면제규정이 있는 83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 또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표현을 사용

> ➔ 제0조(관리수탁금 금액 및 납부방법) ①생략 ②관리수탁금은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군 조례)

문제점

- 위탁료 산출기준이 없을 경우 수탁자와의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위탁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산출될 개연성이 있음
  -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위탁료를 산출할 경우, 과소 산출로 재정누수, 과다 산출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 발생 우려
  - 또한, 감면비율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시장이 정할 경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

개선방안

- 객관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탁료 산출기준 명시
  - 예상수익을 고려한 위탁료 산출기준 제시

* (수입항목)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을 고려

* (지출항목) 인건비, 수선유지비, 세금 등 제경비 등을 고려

  - 자의적으로 표현한 감면사유와 비율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참고1] ○○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략)

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해당 주차장의 공시지가가 없을 시 인접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 공시지가 금액에 ○○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50/1000)을 적용하는 방법
2. 해당 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적용하는 방법

단, 회전율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주차장 가동율{(주차면수×월정금액×12월)÷(주차면수×1일평균운영시간×시간당요금×365일)}을 곱한 것으로 한다.

[참고2] 위탁료 산출 사례(○○군)

- (산출방법) ○○군 현장조사와 수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 분석
  - (현장조사) 년 2회(7일/회) 현지 출장하여 일정 시간(3~4시간)동안의 차량 대수 및 주차요금 등 수입금 파악 · 분석
  - (제출자료)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
    ※ 수입근거(시간당 주차요금, 월정주차요금 등), 지출근거(인건비, 수탁료, 운영비, 사업장관리비, 제경비 등)
- (결과분석) 현장 조사 및 제출 자료를 토대로 주차장 여건과 관리 측면에서 위탁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
- (위 탁 료) 평균치 수입금(현장조사 2회 및 제출자료의 평균) – 해당연도 지출액 × 비율
  ※ '16. 7월 권익위 서면조사 시 제출된 ○○군의 '2015년도 공영유료주차장 위 · 수탁 관리계약 추진계획'을 기초로 재구성

2) 정기적인 위탁료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현황

-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위탁료 산출 주기를 명시한 지자체는 단 1개 [3]
  - 지자체에서 직접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1,256개소) 중, 52%(651개소)가 조례(주차장 조례 외 포함)에 근거 없이 매년 위탁료 산출

문제점

- 위탁료 산출 주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부실한 위탁료 산출로 재정누수 또는 수탁기관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위탁기관이 근거규정 없이 임의의 기간에 위탁료를 산출할 경우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에 저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의 발생 소지가 있음
    * 위탁료를 매년 산출하지 않을 경우 정기적인 수입 · 지출 파악이 어렵고, 수입 · 지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한 위탁료가 산출될 우려

개선방안

- 위탁료 산출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위탁료를 매년 산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적정한 위탁료가 책정되도록 개선

[참고]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③ (생략)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되, ------- 중략 -------, 수탁료는 매년마다 산출한다. 다만, 위탁관리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3) 매 회계연도 마다 위탁료 산출

3) 주차장 조례

【예 시】

<table>
<tr><th>현 행</th><th>개선안(예시)</th></tr>
<tr><td>〈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구분</th><th>선정 방법</th><th>납부하여야 할 금액</th><th>납부 방법</th></tr>
<tr><td>1. 제1항제1호의 경우</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
<tr><td>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td><td>(생략)</td><td>시장이 정하는 금액</td><td>(생략)</td></tr>
<tr><td>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td><td>(생략)</td><td>계약금액</td><td>(생략)</td></tr>
</table></td><td>제00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시장은 제0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관리운영하면서발생하는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개월마다 ○○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td></tr>
</table>

※ 본 평가서의 '개선안(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문에 불과하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하여 소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 수정 · 삭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함.[이하 '개선안(예시)'도 같음]

02 | 평가를 통한 갱신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관련 보도사례

- ㅇㅇ구청은 전년도 운영수익을 횡령한 수탁업체와 별다른 제재 없이 재계약, 민선 지자체장은 수탁업체인 상인회를 외면할 수 없는 구조, 상인회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 [ㅇㅇ뉴스, '16. 2월]

평가대상 조문 : 주차장 조례

- 갱신계약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부재
- 조례 미제정 181개 지자체(77%)

제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⑤ (생략)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 갱신계약 시 평가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특혜가능성 사전 차단

현 황

- 갱신계약 시 수탁자의 수행실적 등 평가근거가 있는 지자체 23%(54개)

〈갱신계약 시 평가규정 운영 지자체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합계(개)	규정 없음	규정 있음(54, 23%)			
		주차장 조례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조례	기타
235	181(77%)	1	21	30	2

- '10년~'15년 2회 이상 갱신계약을 한 494건을 분석한 결과 77% (378건)가 평가절차 없이 자의적 · 관행적으로 기존업체와 계약 연장

〈'10~'15년 갱신계약 시(공사 · 공단 제외 민간) 평가 실시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건)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소계	494(100%)	80	81	83	82	83	85
평가 실시	116(23%)	18	19	18	19	21	21
평가 미실시	378(77%)	62	62	65	63	62	64

문제점

- 갱신계약 시 평가절차 없이 위탁계약을 연장할 경우 해당업체는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반복될 경우 특혜 발생 소지
  - 또한, 수탁업체 입장에서 갱신계약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탈락 시 행정의 투명성 결여를 문제 삼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 갱신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근거와 기준 마련

–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갱신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간 계약연장 등 특혜소지 차단

– 관리 · 운영능력, 위탁사항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에 대한 수탁업체의 예측가능성 제고

➔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계약 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결정(5년 이내에 2회 이상 가능)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ㅇㅇ공사는 '15년 계약이 종료되는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 별다른 평가절차 없이 시의 재위탁 승인만으로 2년간 연장계약('16년 6월 권익위 실태조사)

2) 갱신계약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회 제도 도입

현 황

- 갱신계약 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례(주차장 조례 외 포함)가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17%(39개) 이며,
  - 이해충돌방지 조항 7%(17개), 외부위원과반수 의무 조항 10%(24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합계(개)	규정 없음	규정 있음(39, 17%)							
		이해충돌방지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인원 하한선		위원장 공무원배제	
		○	×	○	×	○	×	○	×
235	196	17(7%)	22	24(10%)	15	31(13%)	8	6(3%)	33

- '10년~'15년 2회 이상 갱신계약 시 평가를 실시한 116건을 분석한 결과 91%(106건)가 평가위원회 구성 없이 자체평가로 실시

〈'10~'15년 갱신계약 시(공사 · 공단 제외 민간) 평가단 운영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건)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116(100%)	18	19	18	19	21	21
위원회 평가	10(9%)	2	1	2	2	2	1
자체평가	106(91%)	16	18	16	17	19	20

문제점

- 평가방법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평가시마다 달리 정할 경우, 자의적 평가방법 결정으로 인한 평가의 신뢰도 저하 및 특혜발생 가능성 내재
  - 평가위원회의 내 · 외부 위원 구성 비율, 자격요건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곤란

개선방안

■ 갱신계약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 평가기준을 토대로 평가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갱신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평가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며, 다른 조례에 근거한 평가위원회 활용도 가능

– 평가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등

· 위원회 구성 시 자격요건, 내 · 외부 위원 구성 비율 명시, 이해충돌방지규정 등을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성, 책임성 확보

[사례] 공영주차장 평가 사례(○○시)

➔ (평가개요) 위탁주차장 지도 · 감독 계획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의식 제고 및 시민 주차편의 증진을 도모

➔ (평가기관) ○○시 시설관리공단(주차장담당부서)

➔ (평가주체) 평가실무위원회 7명(공단 2, 시 2, 고객모니터 3)

➔ (평가분야)

구분	주요내용
친절도	· 불친절 민원, 주차요금징수 투명성, 성실도 등
관리체계	· 계약 및 지도 방침 이행, 지적사항 조치결과, 민원발생시 처리결과 및 개선의지
	· 관리 투명성, 주차관리원 지도감독 등

➔ (평가결과 활용) 세부기준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50점 이하) 등

※ '16. 7월 실태조사 시 해당 시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내용 재구성

※ 공유재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근거로 적용한 사례는 아니지만,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갱신계약의 판단근거로 활용한 사례임

3) 주차장 조례

【예 시】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7조(위탁 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관리 · 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 · 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 · 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개선안(예시) 제7조 제2항 후단의 '별표'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 평가기준, 평가내용, 배점기준 등을 정성 · 정량지표로 구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갱신 여부 기준 등을 마련

03 | 구체적 관리 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 내실화

관련 보도사례

- ΔΔ구청이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을 '19년 5월까지 총 21년 6개월로 연장, 자체 감사결과 협약 변경 상 문제와 '97년~2012년까지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위탁운영 전반에 관리 · 감독 소홀 시인 [ㅇㅇ뉴스, '15. 4월]

평가대상 조문 : 주차장 조례

- 위탁사항에 대한 관리 · 감독 방법 부재
- 조례 미제정 116개 지자체(49%)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생략)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평가기준

-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1) 구체적 관리 ·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관리 부실화 방지

현 황

- 조례에서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 · 감독권을 규정한 자치단체는 51%(119개)에 불과
  - 또한, 관리 · 감독 규정이 있는 119개 조례 중에서도 세부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는 33개에 불과

〈공영주차장 관리 · 감독 근거 조례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합계(개)	규정 없음	규정 있음(119, 51%)		
		주차장 조례	민간위탁 조례	기타
235	116(49%)	26	75	18

■ '15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중인 176개 지자체의 관리 · 감독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45%(79개)의 지자체가 점검실적이 전무

– 또한, 97개 지자체가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60개 지자체가 친절도 · 복장상태 · 서비스 품질 등 형식적인 점검만 실시

〈최근 3년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실시한 지자체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년도	합계(개)	정기	비정기	미실시
2015	176	49	48	79
2014	171	46	42	83
2013	171	46	39	86

* 계획수립에 의한 실적만 인정

문제점

■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규정 불비(116개 지자체) 및 형식적 점검 등으로 인한 위탁관리 부실화 초래 및 부패가능성 증가

–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활동이 법적 근거 없이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될 경우 불필요한 간섭으로 오해할 수 있음

– 관리 · 감독이 미흡으로 수탁재산의 수입 · 지출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위탁료 산출이 어려워 위탁료 산출의 부실 초래

➔ 대부분 시설물 관리상태, 친절도, 복장상태, 요금표 적용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환경정비, 부당요금 징수 여부, 수익 · 운영시간 · 부당징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

➔ 일부 지자체만 주차장 수입 · 지출 상황, 분기별 운영실적 등 실질적 위탁관리에 대한 점검 실시 ('16.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 관리 · 감독 규정 마련

–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 근거, 방법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관리 · 감독의 실효성 확보

• (예시) 현장 출입 · 조사, 주차관제시스템, 장부 등 확인 · 조사 및 위법 · 부실운영에 대한 시정 · 주의 · 개선 요구 등

– 수탁재산 관리상황(수입 · 지출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의무 규정

* 보고 주기와 보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관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

2) 구체적인 제재규정 마련으로 수탁업체의 책임성 확보

관련 보도사례

ΔΔ공사는 총 12개의 공영주차장을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하고 있으며 그 중 10개는 십여 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 이들 수탁 민간단체들은 ΔΔ시와 ΔΔ공사가 주차장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세부자료 없이 총수입액과 총지출금액만 적어 제출하거나 대부분은 아예 제출을 거부 [ΔΔ뉴스, '15.4월]

현 황

-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해지 · 해제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는 54개(23%)에 불과
  - 사유도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규정

문제점

- 수입 · 지출 상황 보고 거부, 위탁료 미납 또는 지연 납입 시에도 제재가 미흡하여 수탁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 감독이 곤란
  - '13년~'15년 기간 중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8건이며, 대부분 시정, 주의, 경고 등에 그쳐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미흡

개선방안

- 수탁업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해지(또는 해제) 조항 마련

– 관리상황 보고의무 거부(지연 보고, 거짓 보고 등), 위탁료 지연 납입 시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위탁료 횡령, 미승인 주차권 발행, 운영시간 외 영업, 시정조치에 대한 개선의무 위반, 관리소홀 지적 개선의무 위반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지자체 특성 및 실정에 맞춰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세부절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참고] 계약 해지(또는 해제)를 규정한 조례

➔ ○○시 주차장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③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 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계약의 해제)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수탁관리기간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탁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 · 양여 또는 위임운영하게 하였을 경우
2. 주차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관계법규 및 행정명령 등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관리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주차장 조례

【예 시】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10조(관리 · 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 · 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00조제00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04 |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 및 재위탁 규정 개선

관련 보도사례

- △△공사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중 10개 주차장에 대한 재계약을 관행적으로 특정단체와 수의계약, 이는 계약방식과 임대료를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심 행정용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 [○○일보, '15.1월]

평가대상 조문 1 : 주차장 조례

-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수의계약 규정
- 수의계약 근거 조례 제정 137개 지자체(58%)

제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군수가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평가대상 조문 2 : 주차장 조례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에 따라 ○○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 · 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1) 수의계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특혜 시비 해소

현 황

- 주차장 조례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는 지자체는 137개(58%)
  – '15년 기준 민간업체에 위탁중인 공영주차장 중 371개소(21%)가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방법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 분	합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기타
합계(개소)	1,739	1,032	298	8	371(21%)	30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1,256	676	248	6	301	25
지방공사 · 공단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483	356	50	2	70	5

문제점

■ 조례에 수탁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특정 업체와의 장기 계약, 특혜 부여 등 문제 발생

➔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 수탁업체로 선정하는 등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특혜 시비 발생('16. 6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수의계약 근거를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명시

– 수의계약 근거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수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특정업체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수탁기관에 선정될 경우 투명한 위탁료 산출이 어려워 재정누수 가능성이 높고, 다른 업체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등 민간위탁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 초래

2) 법령에 근거 없는 재위탁 규정 개선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08년부터 1년 단위로 '13년까지 ΔΔ시장 번영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면서 번영회가 제3자에게 5년 동안 재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해마다 공영주차장 지도 · 감독할 때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고, '13년 9월 번영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때 재위탁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계약해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탁한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13년 ○○시 감사결과보고서)

현황

- 주차장 조례에 재위탁 규정이 있는 지자체는 11개
  - 10개 지자체는 재위탁 금지, 1개 지자체는 재위탁 허용

문제점

- 법령에 근거 없이 재위탁 할 경우 계약, 위탁료 산출, 관리 · 감독, 평가 등 위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위탁관리 전반의 부실 초래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금액을 당초 위탁금액 보다 낮게 책정하여 계약할 경우 최초 수탁자의 부당한 소득 발생 및 감독기관과의 유착 발생 우려

개선방안

- 「주차장법」에 위배하여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조례의 관련 조문 개선
  * 재위탁에 따른 재정누수 우려, 권한과 책임 소재 불분명, 관리 · 감독의 부실화 등을 방지

공영주차장 재위탁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탁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나,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명시적인 재위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재위탁을 위해 별도의 법령상 근거 필요(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 행정권한의 범위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에 따라 설정되는 것(행정권한 법정주의)으로 재위탁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 주차장법은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전문가 자문 결과

- 제3자에 대한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며 법률에 재위탁조항이 없으면 엄격하게 해석하여 재위탁이 금지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또한 제3자 재위탁의 요건이 상위법에 규정됨이 없이 각 지자체 조례에서 상이하게 규정되는 것은 결국 지자체 행정편의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에 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3) 주차장 조례

【예 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의견[4]】 지방공사 · 공단에 민간위탁 수탁자 지위 부여

관련 조문 :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현황

– 주차장법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85개 지자체가 지방공사 · 공단에 위탁하여 수행 중

– 174개 지자체가 지방공사 · 공단에 대한 위탁을 '민간위탁의' 범주에서 배재하도록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참고 의견

– 지방공사 · 공단에 대한 위탁업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전문가 자문 결과

- 현재 '민간위탁'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동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이때 '민간' 즉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범위에는 사적 법인뿐만 아니라 공사 · 공단 등 특수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 권고사항은 아니며, 업무추진 시 참고사항 임

제5절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사항

대상기관 : 235개 지자체(주차장 조례가 있는 지자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대상	조치기한
1. 위탁료 산출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조례	235개 지자체 중 해당 지자체	'17. 11
2. 평가를 통한 갱신계약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17. 11
3. 구체적 관리 · 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 내실화			'17. 11
4.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 및 재위탁 규정 개선			'17. 11

※ 조치기한 설정 : 조례 개정 1년 이하, 규칙 6개월 이하

※ 관련 규정개선은 주차장 조례(규칙)를 기본으로 하되, 민간위탁 조례(규칙), 공유재산 조례(규칙) 등의 연계성과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

개선권고(안) 조치 대상기관 현황

구 분	대상 지자체
서울특별시(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17)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광역시(9)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인천광역시(11)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6)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6)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31)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강원도(18)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11)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15)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라북도(14)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22)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23)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상남도(18)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1)	제주특별자치도
계	235개 지자체

※ 조치대상 기관은 「주차장 조례」가 있는 지자체이며, 세부 개선권고 과제별 조치대상 여부 결정은 추후 지자체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확정할 예정임

붙임 1. 용어의 정리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서로 달라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본 평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법령입안 · 심사기준 등

- (공영주차장)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
-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위탁)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
- (민간위탁)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재위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
- (갱신계약)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과 계속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
  ※ 지자체에서 연장계약, 재계약, 재위탁 등의 용어로 사용 중
- (위탁기관) 자기의 권한(책임)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
- (수탁기관)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재위탁기관)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재수탁기관)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사무를 재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붙임 2. 자치법규 개정시 유의사항

▸ 본 평가서의 '개선안(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문에 불과하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하여 소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 수정 · 삭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함

▸ 본 평가서는 「주차장 조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예시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이 「민간위탁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주차장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주차장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주차장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급적 「주차장 조례」에 관련 근거를 명시

※ 관련 조례의 규정이 본 개선권고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면 해당 조례를 개정

▸ 본 평가서는 「주차장 조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예시하였으므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법적 체계에 맞춰 관련 내용을 '규칙'등에 규정할 수 있음

붙임 3.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안내사항

▸ 공직자등이 아닌 공무수행사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

붙임 4. 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안내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 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적용

▸ 법 제31조에서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의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붙임 5. 「주차장 조례」 개선 표준안

〈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table>
<tr><th>현 행</th><th>개선 표준안(예시)</th></tr>
<tr><td>제1조(목적)</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제2조(적용범위)</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제4조(주차장의 표지)</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td><td>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td></tr>
<tr><td>제6조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구분</th><th>선정 방법</th><th>납부하여야 할 금액</th><th>납부 방법</th></tr>
<tr><td>1. 제1항제1호의 경우</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
<tr><td>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td><td>(생략)</td><td>시장이 정하는 금액</td><td>(생략)</td></tr>
<tr><td>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td><td>(생략)</td><td>계약금액</td><td>(생략)</td></tr>
</table></td><td>제6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td></tr>
</table>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개월마다 ○○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7조 〈신설〉	제7조(위탁 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관리 · 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 · 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 · 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제8조 〈신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9조 〈신설〉	제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 〈신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신설〉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제12조 〈신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제4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신설〉	제13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 〈신설〉	제14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적용 한다.
제15조(주차장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현행과 같음〉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현행과 같음〉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 처분)	〈현행과 같음〉

제4장
자발적 개선 사례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사례
제2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01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사례

제4장
자발적 개선 사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2조(급수종별 순위 및 업종변경)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다음방법에 의한다.

1.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2. 주된시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주된시설에 따른다.

② 급수업종의 변경은 수도사용자등이 제출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신고서 또는 관계공무원이 작성한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에 따라 처리한다.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합리성

현황 및 문제점

-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요금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산정(조례 제24조제1항)

- 건물 내 입점한 편의시설(커피전문점, 24시간 편의점 등)에 대하여 급수업종 적용 시 동일업종은 동일한 요율로 수도요금이 부과되어야 하나
  - 건물의 주된 시설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사용량이 동일하여도 병원에 입점한 편의시설은 급수업종이 공공용으로 적용되고, 일반빌딩에 입점한 편의시설은 급수업종이 일반용으로 적용되어 병원에 입점한 편의시설의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

검토결과: 개선권고

- 편의시설에 대하여 급수업종 적용 시 동일업종 간 수도요금 산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개선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22조(급수종별 순위 및 업종변경)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다음방법에 의한다. 1.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2. 주된시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주된시설에 따른다. ② (생 략)	제22조(급수종별 순위 및 업종변경)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많은 업종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주된 시설의 업종을 따른다. 2.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23조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주된시설의 대표자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및 문제점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해야 함

- 그러나 보조금을 교부조건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여도 정산서 제출 시 대응투자 실적만 있으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 ·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조금 중단 등의 제재조치 근거규정 마련

【개선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교육감은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 ·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의 중단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4조(사용신청) ① 제3조의 이용대상자중 학생들이 단체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이 수련 실시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전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콘도형 숙소 사용 신청은 수련원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현 황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음(조례 제3조)
  -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도 · 감독하는 학교의 학생
  -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생들이 단체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이 수련 실시 전년도 11월 말까지 사용허가를 신청

-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

문제점

- 학생 단체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수련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해서만 규정에 명시하여 사용허가권자의 재량으로 단체에게만 사용 특혜를 부여할 우려

- 성수기, 공휴일 등 사용 희망자가 많아 콘도형 숙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공무원 등이 수련을 이유로 숙소를 사용하는 등 혜택을 누릴 가능성

  – 예약관련 담당자 등과 수련원 이용을 원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청탁 등 관행적인 부패 유발

검토결과: 개선권고

- 개인 이용자에 대한 사용신청 절차 마련

  –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의 도입

【개선 예시】

현행규칙	개선권고
제4조(사용신청) ① (생 략)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전까지 수련원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콘도형 숙소 사용 신청은 수련원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4조(사용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 전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제3조에 따른 이용 대상의 개인 사용 신청은 매월 15일에 신청하는 정기예약과 정기예약 잔여분 및 예약취소 분에 대하여 수시로 신청하는 수시예약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수련원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수련원 이용대상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개선결과

제4조(사용신청) ① 제3조의 이용대상자중 학생들이 단체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이 수련 실시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 전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이용 대상의 개인 사용 신청은 매월 15일에 신청하는 정기예약과 정기예약 잔여분 및 예약취소 분에 대하여 수시로 신청하는 수시예약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수련원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34조(요금경감) ①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요금 경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서울시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하수 재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마곡지구에 재처리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 시장은 하 · 폐수처리수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조례 제26조제1항)

문제점

-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 부과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요금 경감이 결정될 가능성
  - 요금을 경감 받기 위해 불법 로비 등 부패가 발생할 우려

검토결과: 개선권고

- 요금경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 천재지변 지역, 계량기 자가검침을 신청한 경우 등

【개선 예시】

제정안	개선권고
제34조(요금경감) ①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요금경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계량기 자가검침을 신청한 경우 3. 요금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급수과정에서 특별히 경감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요금 경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요금 경감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제34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제1호~제3호까지의 사항을 무력화시키는 규정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거나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익상 또는 급수과정에서 특별한 경감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1. 융자금의 보관 ·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반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기준

-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현 황

-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재난기금의 융자 신청, 대출, 상환 등 융자금 관리에 관한 내용 규정

문제점

-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적정성 부재

– 융자 사무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시 지정 금고에 위탁 · 대행 하도록 규정(안 제6조)하고 있어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요구됨에도

  • 위탁 · 대행 업무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 검사 등의 해당 조항이 마련되지 않음

⇒ 행정의 처리절차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위탁 · 대행 사무의 관리 · 감독 규정이 불투명한 결과에 따르는 부패 소지 존재 및 책임성 미확보

검토결과: 개선권고

■ 위탁 · 대행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부패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개선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 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1. 융자금의 보관 ·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반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지정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 지정금고의 융자업무 대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단, 위탁 수행수수료는 연간 해당연도 융자금액의 (1.0)* 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시 지정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상환,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현 황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모범사업체 선정 · 포상 및 모범사업체에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 근거 마련

문제점

- 모범사업체 선정기준,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각종 지원 수혜를 목적으로 한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개선의견

- 모범사업체 선정 · 지원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
  -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며,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중단을 위한 자격철회 규정 등 마련
  - 또한 위와 같은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대외적으로 공고하도록 함

【개선 예시】

개정안	개선안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모범사업체는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등 선정계획을 수립 ·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제6조제4항(선정의 취소)의 경우 중대한 위법사유로 선정의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정안처럼 취소를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지사는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시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7. (신설)

8. (생략)

제8조(자료 요구 및 제출 등) ①~④ (신설)

평가항목

- 접근의 용이성

현 황

- 시민감시관의 직무 및 권한
  - 아래의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 현장확인을 통한 감시 · 평가
    -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공사
    - 5억원 이상인 설계 및 감리용역
    - 1억원 이상인 물품의 구매
  - 사업 발주과정 · 계약체결과정 · 계약이행과정 등 3단계 평가 주관
  -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 협의회 참여

문제점

- 시민감시관의 직무가 대규모 공사 · 용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감시 기능 미흡
- 시민감시관의 권한이 계약 업무 및 시정 · 감사 요구에 한정되어 있어 소극적인 역할 수행

개선의견

- 시민감시관이 시정 전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및 권한 확대 권고

개선결과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10억원 ----------

나. 1억원 이상인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용역 등

다. (현행과 같음)

라.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고충민원 공동조사 · 처리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 중재
5. 제18조에 따라 의뢰 · 요청된 감사
6. 협의회에서 심의 · 의결한 직권 조사활동 대상에 대한 조사
7. 계약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한 의견 제시
8. 대표 시민감시관의 협의회 참여

제8조(자료 요구 및 제출 등) ① 제7조의 감시 · 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시민감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7조의 감시 · 평가대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시민감시관에게 심의목록과 일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민감시관은 제7조의 감시 · 평가 대상과 관련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시민감시관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 이송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민감시관에 제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8조(축제의 평가) ③ 축제평가단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공개성

현황 및 문제점

- 축제 개최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평가자의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평가의 객관성 ·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축제평가단의 평가항목을 조례에 명시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개선 예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8조(축제의 평가) ③ 축제평가단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축제의 평가) ③ 축제평가단 또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남은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 대로 계산하여 정산 · 반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

현 황

- 시장은 하늘공원의 증설 · 재배치 또는 개선이 필요하거나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취소(조례 제9조제1항제4호 · 제5호)
  -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조례 제10조)

문제점

- 사용료의 반환 신청 시 지정된 서식에 따라 민원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하나
  - 반환 결정 후 지정된 기일 없이 막연히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저해

검토결과: 개선권고

- 반환 결정 후 반환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 예시】

제정안	개선권고안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중 1명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대전 · 충남지역본부장
4.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5.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6.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 본부장
7.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원
8.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자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에 기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①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심의 ②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임

문제점

- 기금운용관련 심의의 공정성 · 신뢰성 · 중립성 저해 가능성 내재
  -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기금의 출연을 받을 수 있는 수혜기관이며,"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은 기금의 관리 · 운용 등의 업무수탁 기관이 될 수 있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되므로,
  - 해당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및 성과분석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 신뢰성 · 중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내재

-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심의의 전문성 · 신뢰성 미확보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거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위촉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검토결과: 개선권고

- 기금의 수혜기관 및 업무 수탁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한 규정 삭제
-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6조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중 1명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대전 · 충남지역본부장 4.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5.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6.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 본부장 7.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원 8.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자	제16조④ (개정안과 같음)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2. 중소기업중앙회 대전 · 충남지역본부장 3.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4.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 본부장 5. 공인회계사 · 대학교수 등 회계 전문가 6. 도내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임직원 7. 금융기관의 여신평가 전문가 8. 경제 · 금융 관련학과의 교수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관련 규정 없음

평가항목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 부패행위자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 등 부패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2차 부패행위 발생 가능

개선의견

- 부패행위로 인한 비위로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윤리의식 제고방안 마련

개선결과

제9조(부패행위자의 처리) ① 시장은 부패행위로 인한 비위로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보 조치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이수를 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부패행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02

제2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제4장
자발적 개선 사례

재산 관리·처분 업무세칙

평가대상 조문

제25조(입찰보증금)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공사가 지정한 가상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현 황

- 재산 대부 · 매각 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입찰금의 초과분은 전부 국고에 귀속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사규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 초과분을 모두 국고에 귀속함으로써 입찰자의 혼란 및 경제적 부담 발생

검토결과

-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사 업무세칙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10%로 적용한 규정을 법령에 근거한 5%로 조정하고, 최저입찰금 초과분을 낙찰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민원인(입찰자)의 입장에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을 5%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공사 관리 재산 입찰시도 동일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개선결과

재산 관리 · 처분 업무세칙

제25조(입찰보증금) ①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공사가 지정한 가상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낙찰자가 제33조제3항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을 국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입찰참가시 등록한 낙찰자의 예금계좌로 반환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입찰보증금과 관련하여 사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비해 입찰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저입찰금 초과분 전부를 국고에 귀속함으로써 입찰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비합리적으로 크게 가해진다는 점에서 '준수부담의 합리성'의 기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처리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8조(부정행위 처리) ①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를 제한한다.

제38조(부정행위 처리) ① 기능수준평가에서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기능수준평가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결과를 0점으로 처리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 황

- 정부는 '97년 외국인 연수생의 불법근로, 사업주의 노동착취 등의 예방대책으로 산업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송출비리, 인권침해, 불법체류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04.8.17.부터 고용허가제로 전환
- '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도입하였고
- '10년부터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초기능, 체력, 면접 등을 평가하는 기능수준평가 실시

문제점

- 기능수준평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미비
  -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답안지 교환, 대리응시, 쪽지 사용, 답안카드 교환, 휴대폰 사용 등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부정행위자는 2년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 기능수준평가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0점 처리할 뿐 시험응시 제한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미비

검토결과

- 공정한 외국인근로자 선발 및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뿐만 아니라 기능수준평가에도 부정행위 제재내용 추가 필요

개선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처리 규칙

제38조(부정행위 처리) ② 기능수준평가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결과를 0점으로 처리하고, 평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를 제한한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관리 요령

평가대상 조문

제6조 (채용의 원칙) ③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로 제한한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2.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채용할 때
3. 고용기간이 6개월 이내 단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공사는 인력의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구성
  - 급식보조 인력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타 기관 대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매우 적음

구 분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정 원	5	2,685	13	–
현 원	5	2,597	4	18

문제점

-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원이 극히 적어, 관리규정 등 제도적 장치 미흡
  -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공직자와 직원가족 채용은 정규 직원 채용시에만 금지
- 채용비리는 특별채용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며,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는 사례 빈발

〈 유사 부패 사례〉

광양시, 취업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고발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B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A씨가 2010년 당시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신고와 제보를 받았다. 실제 2009년 시 고위직 간부로 근무하던 A 씨는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듬해인 2010년 자녀 2명을 공기업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명의 아들 중 첫째 아들은 A 씨가 시 본청에 근무할 때 시 산하 공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둘째는 A 씨가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것. [2014.11.10 국제뉴스]

검토결과

-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공직자 및 직원가족 특별채용 금지 조항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채용에도 적용
  - 인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시켜 인사비리 발생 가능성 최소화

개선결과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관리 요령

제6조(채용의 원칙) ③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로 제한한다. 다만,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공직자와 직원가족은 특별채용 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2.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채용할 때
3. 고용기간이 6개월 이내 단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인사규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5조(출제 및 출제위원) ① 시험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채용대행기관에 출제를 의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자
2. 당해 시험과목에 대해 출제한 경력이 있거나 이를 전공한 자

②~⑦ (생략)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공정한 직원 채용을 위해 직원 채용시 필기시험을 실시
  - 시험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채용대행기관에 출제를 의뢰하거나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출제하고 있으며,
    ※ 출제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자 및 당해 시험과목에 대해 출제한 경력이 있거나 이를 전공한 자
  - 시험출제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문제점

- 출제위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적합하지 않은 출제위원 위촉 가능
  - 직원 채용시 직렬 및 직급에 합당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하며,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는 경우에 출제위원이 시험문제 출제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
  -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 시험과목에 대해 출제한 경력이 있거나 이를 전공한 자"는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그 결정권자의 재량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출제위원을 위촉할 가능성

- 시험 출제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출제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으나, 응시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출제위원에서 제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검토결과

- 시험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량기준의 구체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 시험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출제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조(출제 및 출제위원) ① 시험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채용대행기관에 출제를 의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하되, 채용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1. 당해 분야에 박사학위 이상인 자
2. 당해 분야에 석사학위가 있는 자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당해 분야에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관련분에야 5년 이상 종사한 자
4. 당해 시험과목에 대해 출제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처리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83조(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① 이사장은 보험사업자로부터 인수한 휴면보험금을 원 권리자에게 찾아주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EPS센터, 송출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휴면보험금 원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해당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재불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항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송출국가 일간지, EPS센터, 송출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 권리자가 휴면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보험사업자로부터 이관 받은 휴면보험금 등은 이관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휴면보험금 원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보험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현 황

- 기관은 '04년부터 발생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143억원 상당)을 전용보험사로부터 이관받아 유관기관과 함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 중

  ※ 휴면보험금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퇴직금), 귀국비용보험(항공권)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

- 휴면보험금은 전담은행사를 선정하여 예치하고 자금관리, 해외송금 등의 업무를 전담은행사를 통해 수행

문제점

- 전담은행사 선정기준 미비로 특정 은행사 특혜 및 유착 가능성
  - 휴면보험금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용방법,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및 선정기준이 없어, 특정 은행사에 특혜를 주거나 직원과 은행사 간 유착관계가 형성될 우려

- 휴면보험금 안정성 및 수익률 보장을 위한 자금운용 기준 미비
  - 전담은행사의 자금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률과 안정성 등의 내용이 달라지나, 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수익률 저하 및 원금손실 등 발생할 우려

검토결과

-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예치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은행사 선정기준 및 절차 내규화

- 전용보험사로부터 공단으로 인수한 휴면보험금 등에 대한 자금관리 및 운용 기준 마련

개선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처리 규칙

제83조(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1항의 휴면보험금 등을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 적금 등 원리금보장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금관리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전담은행사를 선정하여 휴면보험금 등의 관리 ·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의 전담은행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신 설〉

연구개발관리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6조(사용범위) ① 연구개발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비
2.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3. 연구개발 운영 및 시설비
4. 인력양성 및 전산개발비
5. 전력기술과 관련되는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관련기관에 대한 출연
7. 기타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지적재산권 관리비용 및 보상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현재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제비 등 8개의 사용범위로 정의되어, 연구개발 범위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운영중

문제점

-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R&D와 연관성이 없는 예산명이 포함되어 실적 부풀리기 등 통계상 왜곡발생
- R&D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범위로 분류되어 재정누수 및 예산사용의 불투명성 잠재
- 객관적인 연구개발비 산정이 어려워 대내외 연구개발 투자 현황 산정 및 집행시 재정안정성 확보가 미흡

〈 연구비 비리 유형 〉

감사원 R&D 감사('08~'12) 결과 총 548건 중 387건이 연구비집행 부적정 사례 지적

- (대학) 학생연구원 인건비 횡령,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 (출연연) 위장가맹점(유흥주점)에서 부정사용 등
- (기업) 유령회사 설립 · 거래, 회사 경영자금으로 전용, 납품기업과 공모 등

검토결과

- 정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범위 축소

개선결과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6조(사용범위) ① 연구개발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비
2. 연구개발 운영 및 시설비
3.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관련기관에 대한 출연
4. 기타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적재산권 관리비용 및 보상

협력업체운영지침

평가대상 조문

관련 규정 없음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예측가능성

현 황

- 부진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의신청 규정이 없음

문제점

- 부진 협력업체 선정 관련 협력업체의 권리침해 우려
  - 부진 협력업체로 선정시 재등록 및 적격심사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벌칙을 부과하면서 해당업체의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협력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 부진 협력업체 선정 시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부진협력업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대상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7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 등 이의신청 관련 행정처리절차를 신규 도입함으로써 이해관계자(민원인)의 행정절차에 대한 접근 용이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선결과

협력업체운영지침

제28조의2(이의신청 등) ① 협력업체 관리부서는 제27조제3호에 따라 부진협력업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대상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7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협력업체 관리부서는 대상 협력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평가를 담당한 협력업체 운영부서에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재평가 요청을 받은 협력업체 운영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협력업체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계약사무 처리지침

평가대상 조문

제4조(규격공개) ① 수요부서의 장은------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과 사전 협의 후 사전 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2. 구매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의 물품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 공개한 물품
4. (생 략)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공개성

현 황

- 기존 구매구격 사전공개 대상을 구매 추정가격 1억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공개를 실시
- 입찰규격에 대한 사전공개 범위의 적절성 등 검토 필요

〈계약관련 법령 상 사전 규격공개 범위 현황〉

계약관련법령	사전 규격공개 금액
국가계약법령	1억원 이상
지자체 계약법령	5천만원 이상
조달청 내자구매규정	5천만원 이상

문제점

- 공공기관 등이 자체조달 구매물품의 규격을 사전공개하지 않아 입찰참여업체들로부터 특혜 의혹 제기

〈 관련 보도 〉

➔ ○○의회 전산장비 입찰공고에 특정업체만 입찰가능하도록 '규격서'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해당업체로부터 ○○의회 직원은 8,000여만원 뇌물수수, 해당업체는 뇌물을 대가로 자신들만 공급할 수 있는 특정사양을 '규격서'에 담아 전산장비 납품독점 수주['15.5월 언론보도]

- 입찰규격에 대한 사전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의 투명성 · 공정성 강화 필요
- 공개대상 계약유형을 '물품 및 용역'으로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방지 필요
  - 현재까지 '물품'으로 표기하고, 물품과 용역을 포괄하여 적용해 옴
  - 관련법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77조

검토결과

- 사전규격 공개 범위를(계약관련법령)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여 계약의 투명성 · 공정성 강화
  - 사전 규격공개대상 입찰건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대상 계약유형을 물품 및 용역으로 명확히 함

개선결과

계약사무 처리지침

제4조(규격공개) ① 수요부서의 장은-------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과 사전 협의 후 사전 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2. 구매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 공개한 물품 및 용역
4. (현행과 같음)

계약사무처리지침

평가대상 조문

관련 규정 없음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 황

- 종전 입찰보증금 관리 등을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왔으나, 내부규정에 관련내용이 불비하여 개정 필요
  - 입찰보증금 납부금액을 국가계약법령상 정한 금액으로 명문화하고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징구관련 절차 명확화 필요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 제13조(납부기한의 고지 등) ①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입찰보증금 운영 상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기업 · 국민부담 가중
  - 일부 공기업 등에서 입찰보증금을 정률이 아닌 '○% 이상'*으로 공고하여 입찰 참가자의 과다 납부를 유발

    * 관행적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표기
  - 계약미체결의 사유가 낙찰자 책임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납부고지누락 등 입찰보증금 징수관리가 부실

입찰공고 시 불명확하게 입찰보증금 명기 사례

- (물품) A공사는 윤활유 · 엔진유 물품 구매 입찰공고에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자기앞 수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기
- (용역) B 공사는 모든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을 면제(지급각서로 대체)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금액의 5%이상을 공사로 귀속한다고 공고
- (공사) C공단은 공단 환경공사 제한경쟁입찰 공고문에서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37조 및 제39조에 의합니다'라고만 안내
-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 시 '입찰가격의 10%이상의 공매보증금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공고

검토결과

- 과도한 입찰보증금 귀속을 방지하고 입찰보증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금액범위 중 최저금액(100분의 5)으로 명기함
-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징구절차 시기 등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

개선결과

계약사무 처리지침

제9조의2(입찰보증금 관리) ①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최저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 또는 분임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대상 조문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현 황

- 기공단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함

문제점

- 금전적 이해와 관련해서 명확한 금액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행동강령 조문상 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 공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다른 법령의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하여야 함

검토결과

- 금전적 이해관계에 대한 명확한 금액 기준이 신설 필요

- 금액 기준은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수준(100만원)으로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공적 업무추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개선결과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3.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여러 공직유관단체들이 협력을 통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직무를 임직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사례로서 의의를 지님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대상 조문

관련 규정 없음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 황

- 관에 근무하는 의사직 등이 진료업무에 도움이 되고 참석자 대부분이 국공립대학교수가 포함되어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 의료기기업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해외교육 · 세미나에 소속기구장인 병원장의 사전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참석
  - 교육 참석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 식사 비용은 업체에서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원하였고, 병원별 자체 국외여행 심의 과정을 거쳐 참석 승인해 줌

문제점

- 진료업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소속기구장에게는 재량권 발생 가능성 존재

- 업체에서 해외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의사직에 한해 지원하는 배경은 물품 판매 목적이 상당하고, 결국 이 과정에서 시공간적으로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 있음

검토결과

- 소속기구장에게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재량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해외교육 · 세미나의 경우 원칙적으로 참석불가하도록 규정하고,

- 직무관련 참석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업체로부터 일체의 비용 지원받지 않고 공단 예산으로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함

개선결과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의4(업체주관 해외교육 · 세미나 참석 제한) 리베이트 사전 예방을 위해 공단 임직원은 의약품 · 의료기기업체(협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해외교육 · 세미나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참석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또는 소속기구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참석하되, 공단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참석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부 록

01 | 평가기준별 확인 목록

1) 준수 분야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 · 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 · 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 · 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 · 대상 · 절차 · 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 · 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 · 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 · 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2) 집행 분야

1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 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 ·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 · 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 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 · 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 · 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 ·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 · 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 · 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 · 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 · 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 · 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 · 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 · 형식적 · 독점적인 위탁 · 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 · 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 · 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 · 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 · 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 · 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 · 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 · 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 · 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 · 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 · 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 · 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3 재정누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ㅇ배 추가 환수 등)?	

3) 행정절차 분야

1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2 공개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3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 · 절차 · 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 · 허가, 사전 인 · 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 ·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 · 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4) 부패통제 분야

1 이해충돌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 · 신뢰성 · 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 · 신뢰성 · 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02 | 업무유형별 확인 목록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1)]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절차	■ 인 · 허가, 특허 · 면허, 승인 · 지정, 시험 · 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인 · 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인 · 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 ·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처리기간	■ 인 · 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인 · 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신청서류 등	■ 인 ·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 · 부당한 인 · 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인 · 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인 · 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감독	■ 인 · 허가, 특허 · 면허, 승인 · 지정, 시험 · 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 · 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인 · 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 · 감독의 요건 · 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 검정 · 시험 · 인증 · 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 민원인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 · 하한, 가중 · 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인 · 허가 의제	■ 인 · 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 · 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특혜발생 가능성)	

2 부과·징수 업무[2)]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부과 · 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부과 · 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 ·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부과 · 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 ·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예측가능성)	
가중·감면	■ 행정처분 등의 가중 · 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공무원이 가중 · 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 가중 · 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이의제기	■ 부과 · 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 · 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 · 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 · 처리기간 ·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체납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2) 인 · 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 · 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3 보조·지원 업무[3)]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	■ 보조 · 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 · 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 · 지원 명목으로 보조 · 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선정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 ·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 보조 · 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재정누수 가능성)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 · 부당한 보조 · 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보조 · 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 · 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공개성)	
관리·감독	■ 보조 · 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 · 감독 · 정산 · 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 보조 · 지원 경비의 불법 ·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 · 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4)]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4 위탁 · 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위탁 · 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위탁 · 대행 기준 · 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 ·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위탁 · 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 · 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 · 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위탁 · 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재위탁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재정 지원	■ 수탁 · 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 ·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정누수 가능성)	
재정 지원	■ 위법 · 부당한 위탁 · 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위탁 · 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탁 · 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관리·감독	■ 위탁 · 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자료제출 · 보고 의무, 조사 · 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수탁 · 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제재	■ 수탁 · 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 · 업무정지 · 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 위탁 · 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 ·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수탁 · 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계속적 · 형식적 · 독점적인 위탁 · 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5 행정조사 업무[5)]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6)]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 ·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 · 방법 · 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 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제기	■ 위법 · 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조사대상 · 내용 · 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무단 · 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 [7)] (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제재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 · 하한, 가중 · 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5)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 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 · 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 · 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 · 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 ·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 · 감찰기능 등	

6)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 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7)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6 단속·점검 업무[8)]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의 용이성)	
정보공개	■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제재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8)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타	■ 단속 · 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 · 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 · 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 · 감찰기능 등	

〈참고 : 단속 · 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 · 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 · 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 · 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 · 처리업소, 오수 · 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 · 처리업소, 소음 · 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재량 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금품 ·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재량 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 가능성)	
	■ 위원 구성 시 내부 · 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이해충돌가능성)	
임기 및 신분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제척 · 기피 · 회피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 · 기피 · 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제재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이의 제기	■ 위원회 심의 · 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회의록 작성 · 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 ·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8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 ·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 · 관리하고 있는가?(공개성)	
기관장 재량	■ 임용 · 승진 · 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 · 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 제기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공개성) –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 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 임용 · 승진 · 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 · 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 · 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 연고 · 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 · 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03 |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법 률	시행령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 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 ·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 · 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①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 부과 시 고려사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 징수 방법, 감경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

② 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구성 및 운영 방법, 위원회 설치 시 법령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및 공무원 의제 등 규정

③ 행정업무의 위임·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행정기관 간 위임 · 위탁 기준, 민간위탁 기준 및 대상선정 기준, 지휘 · 감독 등 규정
※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위임 · 위탁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규정

④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 처리 기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 규정

⑤ 행정정보의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등 규정

⑥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등 : 「행정절차법」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 · 공청회, 행정예고 · 행정지도 등 규정

04 | 색인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259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99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규칙	250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158
계약사무처리지침(규격공개관련)	286
계약사무처리지침(입찰보증금관련)	28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6
공단임직원행동강령(업체주관해외교육관련)	292
공단임직원행동강령(이해관계직무관련)	290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72
관세사법 시행령	188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197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8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10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125
국제문화교류진흥법	14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10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11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195
국세징수법 시행령	17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관리 요령	27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1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30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규칙	252
모자보건법	3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90
부산광역시 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	263
북한인권법 시행령	4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4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5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5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24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57
소방장비 관리 규칙	18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1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80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1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3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
연구개발 관리규정	28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5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64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업무처리규칙(휴면보험금찾아주기관련)	280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업무처리규칙(한국어능력시험관련)	274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119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6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94
인사규정시행규칙	278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7
재산 관리 · 처분 업무세칙	272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69
전주시 청렴 시민감사과 운영 조례	2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37
조경진흥법 시행령	170
주차장법 시행령	46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6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8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59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11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6
항공사업법 시행령	29
협력업체 운영지침	284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152

2016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부패영향평가사례집

발행일: 2017년 8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　집: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Tel. 044-200-7657, 766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우편번호 30102)

※ 부패영향평가 관련 문의 및 개선 건의는 위 전화번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